

연구보고서 2008-00

치안성과지표로서 ‘5대범죄’ 적정성 검토 및 ‘대체지표’ 개발

《研究陣》

연구위원 :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 설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추진 개요	10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11
제2장 한국의 치안성과지표 활용실태와 문제점	12
제1절 범죄지표에 대한 개관	12
제2절 치안성과지표 용례의 다양성	16
제3절 치안성과지표로서 범죄통계활용의 문제점	19
제4절 현행 지표범죄관련 개념정의상 문제점	21
제3장 각국의 치안성과지표 활용사례들	26
제1절 미국 사례	26
제2절 영국 사례	27
제3절 독일 사례	33
제4절 일본 사례	41
제5절 캐나다 사례	41
제4장 바람직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실증조사	46
제1절 일반시민 및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46
제2절 경찰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분석	48
제3절 5대 범죄 관련 언론보도 실태	64
제4절 지표범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현행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	69
제1절 기본방향: 現行 ‘5대 범죄’유형을 유지 및 개선활용	70

제2절 절도 및 폭력범죄 활용상의 문제점 개선	71
제3절 장기과제: 선진국형 '6대 범죄' 혹은 '8대 범죄'모델	75

참 고 문 헌	77
---------------	----

표 목 차

<표 2-1> 한국 경찰의 치안지표로서 '5대 범죄' 활용사례	16
<표 2-2> 최근 수년간의 5대 범죄발생 동향(1999-2006년)	19
<표 2-3> 『경찰백서』상의 지표범죄관련 용어사용례	22
<표 2-4> 경찰통계연보상의 지표범죄관련 용어사용례(2003년 경찰통계연보)	23
<표 2-5> 유사용어의 출처와 내포하고 있는 범죄유형	23
<표 2-6> 법무연수원 발행 『범죄백서』에 사용된 범죄분류사례	24
<표 3-1> 미국의 UCR상의 8대 지표범죄(Index Crime)	26
<표 3-2> 영국 수도경찰청의 치안정책 개요 및 평가동향	29
<표 3-3> 영국 내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안지표'관련 사례	32
<표 3-4> 독일 경찰범죄통계상의 大분류 사례(PKS 2006)	35
<표 3-5> 독일경찰이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폭력범죄와 절도범죄 사례	40
<표 3-6> 일본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범죄 사례	41
<표 3-7> 캐나다 연방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발생통계 사례	42
<표 3-8> 캐나다의 지표범죄에 소개되고 있는 범죄유형들	43
<표 4-1> 조사대상자(경찰/시민)의 성별과 연령분포	48
<표 4-2> 경찰관 및 시민들의 치안성과지표 용어에 대한 인식정도	52
<표 4-3> 치안성과지표들에 대한 구체적 인식정도 비교	54
<표 4-4> 치안성과지표 기준의 적합성에 인식	56
<표 4-5> 현행 치안성과지표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63
<표 4-6> 실제 범죄발생건수와 언론보도상의 차이(단위: 건, %)	66
<표 5-1> 범죄유형별 범죄자 조치사항	71
<표 5-2> 치안성과지표로서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모델	76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도	10
<그림 3-1> FBI에서 발표하고 있는 UCR상의 지표범죄(Crime Index Offense, 2002)	27
<그림 3-2>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주요범죄(10대 범죄)’ 동향	30
<그림 3-4> 독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들	36
<그림 3-5> 독일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절도범죄	39
<그림 3-6> 캐나다 벤쿠버경찰청의 지표범죄 활용동향	45
<그림 4-1>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계급분포	49
<그림 4-2> 조사대상 경찰관의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49
<그림 4-3> 치안지표들에 관한 경찰관/일반시민들 인식정도	51
<그림 4-4> 치안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들에 대한 인식	53
<그림 4-5> 절도피해 액수에 따른 경찰력의 개입여부	57
<그림 4-6> 폭력범죄 피해정도에 따른 경찰력의 개입여부	58
<그림 4-7> 경찰관/시민들의 치안성과지표에 대한 친숙도	59
<그림 4-8> 경찰관 입장에서,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범죄지표 ..	60
<그림 4-9> 대표성 있는 치안성과 지표로서 적합한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61
<그림 4-10> 치안성과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62
<그림 4-11>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68
<그림 5-2> 치안성과지표로서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	73

제1장 서 설

제1절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법집행(Law Enforcement), 질서유지 (Public Order Maintenance) 및 공공서비스제공(Public Service Delivery)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근대경찰의 효시(1829년)라고 할 수 있는 영국런던수도경찰청의 초대경찰청장이었던 Richard Mayne경은 다음과 같이 경찰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는 바, “효과적인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범죄예방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임무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수사과 처벌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경찰활동은 그런 임무에 집중되어야 한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찰학자였던 O. W. Wilson 역시 경찰활동의 중요한 방향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기회억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주장은 21C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수립과 방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범죄도시라는 汚名(rotten apple)을 받았던 미국 뉴욕시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서, 근래에는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전임 뉴욕市長 줄리아니와 브래튼 경찰청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이 두 지도자들이 표방한 것은 다름 아닌 □법과 질서(Law and Order)회복□이었다. 또한 그들이 시행한 Zero Tolerance Policing은 선진 각국 경찰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한국에도 소개된 바 있다.

최근 한국경찰이 표방하고 있는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라는 슬로건은 시의적절한 경찰정책 방향제시라고 평가된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한 나라” 부분이다. 이것은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할 정책방향이자, 그 역할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안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대체로 ‘법과 질서’ 확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마다 경찰역할과 기능의 지향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¹⁾ 범죄예방과 수사, 질서유지,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경찰이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sicheres Gebiet)□을 확보, 제공하는 것은 치안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수많은 재해, 사건/사고, 무질서 그리고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들이다.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선진 각국들은 국가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동향이다.

그런데 한국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경찰활동의 방향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못 그 괴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경찰이 추구해야 할 직무의 우선성이 가급적 부합, 일치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은 치안수요자인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 적실한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10월 13일 선포된 □범죄와 전쟁□은 그 결과에 功過를 떠나서, 한국의 형사사법정책 및 치안정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획기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 후 한국경찰에서는 최근까지 “90일 작전, 100일 작전, 180일 작전” 등 소위 短期間에 걸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는 정책들이 수시로 실행된 바 있다. 치안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자체만의 제한된 역량(인력과 자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에게 경찰활동의 성과척도(치안지수 등)와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시하고 싶은 경찰의 입장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 경찰에서는 최소한 5년 이상씩 소요되는 中長期的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경찰력과 財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면서,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삶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1) 독일경찰의 경우, 공공의 안녕(Oeffentliche Sicherheit)과 질서유지(Ordnung) 그리고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및 공공서비스제공을 경찰의 기본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고 있다.²⁾ 매년 초 치안정책과 경찰활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말에 그 성과를 확인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얻어내는 영국 경찰의 안목은 한국경찰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경찰은 □치안정책(Sicherheitspolitik)□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등 경찰활동의 방향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대형사건 사고 혹은耳目을 집중시키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死後藥方文식으로 너무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한국 경찰의 태도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토록 신속하게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短期성과에 주력하는 한국경찰의 고질적인 병폐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찰청장의 “임기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同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보장과 치안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까지 제대로 준수된 적이 없었다. 경찰활동이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많은 과제가운데,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중차대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경찰이 1991년 이후 채택, 시행하고 있는 □5대 범죄□분류시스템은³⁾ 치안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비교, 측정하고 치안자원을 확보하는 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사실이다. 즉 ‘5대 범죄’는 ‘주요범죄’를 통칭(通稱)하는 개념으로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을 말하며, 1991년 범죄와의 전쟁 1주년 성과분석을 위해 도입된 이래 ‘범죄지수와 치안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언론·국회 등에서 ‘5대 범죄’ 통계추이를 근거로 범죄지수 및 치안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동향이다.⁴⁾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에 각 정당의 국회

2) 영국의 「범죄와의 전쟁 10개년 계획」, 프랑스의 「치안개선 및 범죄와의 전쟁 5개년 계획」 등을 보면, 이러한 동향을 쉽게 알 수 있다.

3) 5대 범죄라는 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것은 아니며, 경찰실무상 활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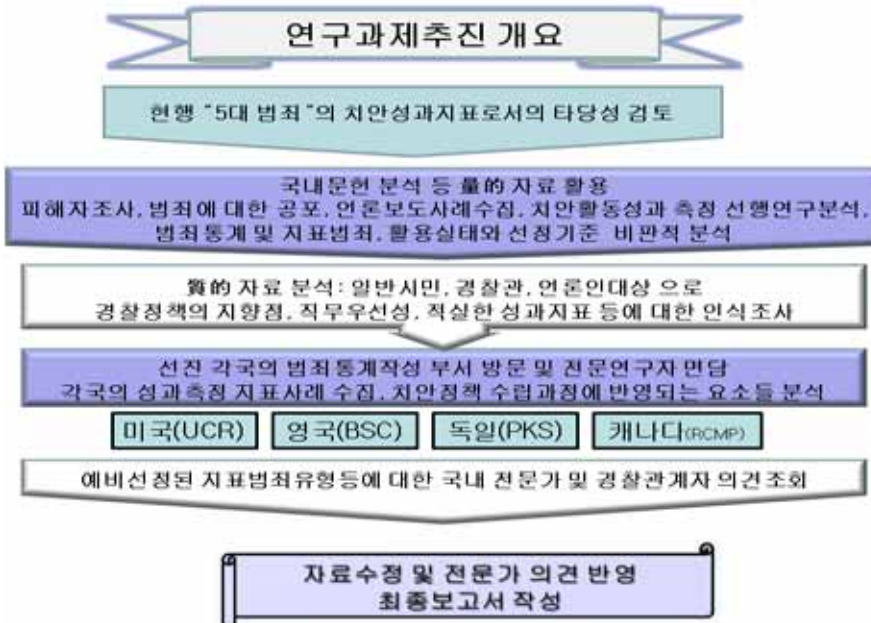
4) 추석연휴 ‘5대 범죄’ 2년 연속 증가.. 추석연휴 중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4일간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는 모두 2천233건이 발생해 지난해 추석연휴 4일간(9월9~12일)의 2천82건보다 1.2% 증가했다.; 경기경찰청 경찰인력 보강 시급....‘5대 범죄’ 未검거율 5년째 1위... 관할면적 비해 경찰관 부족해.....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5대 범죄 미검거율을 각 시도별로 분석,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2002년~2006년 8월말 현재) 경기경찰청이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 앞으로의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최의원은...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의원들은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등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⁵⁾ 경찰활동의 잘잘못을 평가하기도 한다.

수 십년 간 한국경찰에서 실무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5대범죄□ 분류시스템이 익숙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안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적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심지어 통계해석상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자칫하면 경찰활동에 대한 그릇된 평가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금번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공고한 □연구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치안수요(범죄동향,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활동의 지향점(직무우선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합하고, 국제화시대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근접하는 치안정책 지표를 탐색,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추진 개요

<그림 1-1> 연구추진도



5) 경찰청,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등.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 ▷ 국내에는 치안지표 등에 대한 심층연구 사례가 매우 적은 바, 금번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 경찰의 적실한 치안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 현재 한국경찰이 활용중인 □5대 범죄□분류방식 등은 용어의 개념정의, 통일성, 정확성 면에서 많은 취약점이 노정되고 있는 바, 본연구를 통하여 경찰백서, 경찰통계연보, 국정감사자료, 언론 및 he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는 지표범죄의 유형들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시민들, 경찰관, 언론인, 전문가 그룹들의 인식분석을 토대로 특정 범죄유형들을 지표범죄로 선정하게 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치안지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는 지표의 개발로 다양한 사회적 정책에 활용 가능해진다. 同지표들을 토대로 매년 경찰활동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치안당국의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발생추이와 치안정책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 ▷ 시민들과 경찰관, 심지어 언론인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적실한 치안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경찰정책의 지향점이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으며, 경찰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정책 평가상의 오류를 줄이고, 치안공공재 획득에 있어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 바람직한 치안지표를 탐색함으로써, 제한된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체감치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 ▷ 또한 선진 각국의 치안상황과 경찰활동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한국 경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장 한국의 치안성과지표 활용실태와 문제점

제1절 범죄지표에 대한 개관

1. 범죄지표의 개념

‘지수(Index number)’란 어떤 현상에 대한 수준의 추이를 살피거나 또는 몇 개의 현상에 대한 추이를 서로 대비하기 위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수량의 변동을 기준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⁶⁾ 사전적 의미로써 ‘지표(indicator)’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 또는 ‘사물의 기능이 되는 안표⁷⁾’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표’란 어떤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공공 통계치(public statistics)로써 정의되고 있다.⁸⁾ 지표는 일반적으로 단순화, 계량화, 의사전달 등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지표는 첫째, 지표체계를 구성할 때에는 나타내려고 하는 정보를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지표선정과정에서 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목적하는 의미를 잃지 않는 한 최대한 단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해석하기 쉬워야 한다고 하여⁹⁾ 일반적인 지표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지표’란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⁰⁾ 이에 비추어 ‘범죄지표’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그 의미는 매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취급한 형사사건의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검거통계원표·피의

6) 통계용어정의사전(통계청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7) 네이버 국어사전(<http://dic.naver.com/?frm=nt>)

8) 노화준, 『정책분석론』(서울: 박영사, 2004), p. 386.

9) 오영균, 고경훈,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의설계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 280.

10) 통계용어정의사전(통계청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자동계원표)를 토대로 산출한 통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범죄지표의 기능

범죄통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범죄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도표화하고 한 나라의 범죄 정도를 제시하는 지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17세기부터 제기되었다. William Petty(1623~1687)는 최초로 한 국가내의 범죄 및 사회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19세기 들어 국가의 ‘도덕적 건강(Moral Health)’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통계를 사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André Michel Guerry(1802~1866)와 Adolphe Quetelet(1796~1874)에 의해서 발행된 프랑스의 통계는 범죄와 교정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지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찰통계를 만들어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들어 국제경찰장협회(Inter - 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의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정도와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범죄통계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1929년 발행된 보고서는 경찰에 알려진 범죄가 일정한 시기 동안에 범죄의 양과 시간적 간격 사이의 범죄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러한 범죄통계는 범죄지표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분석도구로서 큰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지표’는 경찰청 및 일선관서에서 과거 치안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치안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좀 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출하며,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학문 연구에 활용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치안현황 및 사회안전에 대한 경찰활동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지표의 하나이다.¹²⁾

또한 시민들과 경찰관, 심지어 언론인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적실한 치안

11) Sellin, Thorsten & Marvin E. Wolfgang, “The Measurement of Delinquency, Patterson Smith Montclair, 1978, pp. 10-11; 김준호 외,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p. 21-22.

12) 통계청(<http://www.nso.go.kr/>); 범죄지표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경찰정책의 지향점이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으며, 경찰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정책 평가상의 오류를 줄이고, 치안공공재 획득에 있어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3. '5대 범죄' 지표의 개념

'5대 범죄'는 '주요범죄'를 통칭(通稱)하는 개념으로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을 말하며, 1991년 범죄와의 전쟁 1주년 성과분석을 위해 도입된 이래 '범죄지수와 치안성파'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로서 대내외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언론·국회 등에서 '5대 범죄' 통계추이를 근거로 범죄지수 및 치안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동향이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에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등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경찰활동을 평가하기도 한다.

4. '5대 범죄' 분류 시스템의 연혁(沿革)

경찰청 수사국의 담당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용어사용의 역사적 관점과 용어사용례에 대해서 확인하였는 바 다음과 같다.

- ▶ 1987년 주요범죄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범, 절도범 및 폭력범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바 있다.
- ▶ 1988년에는 '중요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중요범죄' 유형에는 강력범, 절도범 및 폭력범이 포함되었다.
- ▶ 한편 1990년 10월 13일 汎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범죄와의 戰爭□선포를 계기로 형법범 중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어온 주요 '7대 범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同 '7대 범죄'유형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및 마약범죄가 포함되었다.
- ▶ 1991년 11월 17일경, 對범죄와 전쟁 시행 1주년을 맞아, 주요성과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주요 5대 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同 ‘5대 범죄’ 유형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범죄가 포함되었다. 이후 범죄발생현황을 전산 입력하는 소위 ‘202 통계’와 관련,¹³⁾ 범죄통계자료 중 중요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마약, 방화 및 도박)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약취유인 포함)을 5대 범죄로 통계 산출하여 분석, 활용하고 있다.

- ▶ 1999년 이후 2007년 10월까지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마약, 방화를 추가한 7대 범죄(5대 범죄+ 마약, 방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주요 5대 범죄, 7대 범죄로 할 것인지 지정되거나 지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대 변화에 따른 범죄발생 중요도에 따라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도 총범죄발생 동향뿐만 아니라, 별도로 ‘5대 범죄’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2005년도 5월경 1분기 한국의 치안수준을 알리기 위하여 언론에 공표된 내용의 일부이다.¹⁵⁾

13) 1983년부터 전산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범죄통계(202통계)는 경찰청에서 출력된 인쇄물을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 배송하는 운영체계이다. 同 경찰청, 『경찰백서 2007』(서울: 경찰청, 2007), p. 184.

14) 경찰청 수사국, “범죄통계 산출방안 검토보고(내부자료)”, 2005.

15)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5-05-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 mid=etc&oid=098&aid=000004693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046938)(2007년 11월 4일 검색)

<표 2-1> 한국 경찰의 치안지표로서 '5대 범죄' 활용사례

-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외국보다 앞서 -

- 경찰청에서는
- 그동안 **시의성 있는 치안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과 통계치안의 괴리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 금년 1/4분기의 범죄,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법질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최근 증감추이, 유형별 특성, 주요국과의 비교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를 보면,
- [범죄]
- 총범죄 및 **5대 범죄**는
 -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총범죄가 금년 1/4분기에는 17.2% 감소하였고,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주요 5대 범죄도 4.8% 감소하여 안정된 추세로 나타났다.
 - 범죄유형별로는
 - 강력범 중 살인은 0.8% 증가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강간은 6.4%, 강도는 26.1% 대폭 감소하였고, 폭력범도 9.0%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이며
- 재산범 中
- < 절도 >
- 절도는 전체적으로 4.6% 증가하였으나 2·3월에는 오히려 3.9%, 11.2% 각각 감소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 < 사기·횡령·배임 >
- 사기·횡령·배임은 각각 27.3%, 15.4%, 10.0% 대폭 감소하여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더불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국(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독일)과 비교시
 - 절도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 살인·강도는 일본보다는 약간 높으나 미국·프랑스·독일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 강간은 주요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 폭력은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나친 음주문화와 연관되어 주취자 및 폭력사건 처리가 일선 경찰에 큰 치안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치안성과지표 용례의 다양성

경찰활동성과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 및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 범죄통계 및 치안지표(혹은 치안수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統計(Statistics)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가 있다. 즉 「지정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하며,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 외의 통계를 말한다.

특히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활용, 언급되는 (치안)지표 혹은 (치안)지수(指數, Index number)는 일종의 학문상의 개념으로서, 어떤 (치안)현상에 대한 수준의 추이를 살피거나 또는 몇 개의 현상에 대한 추이를 서로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수량의 변동을 기준 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값으로서 나타낸 값을 말한다.¹⁶⁾

그런데 실무적으로나 언론에서 평소 경찰정책(혹은 치안정책)과 연관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치안수요,¹⁷⁾ 범죄현황 등의 지표,¹⁸⁾ 각종 치안지표,¹⁹⁾ 주요 치안지표,²⁰⁾ 민생치

16) 한국통계학회 편, 『통계용어사전』(서울: 자유아카데미, 1991) 참조.

17) 대전일보 2006-09-27자.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이후 중부권 핵심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인력과 예산 등의 치안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251536>(2007년 11월 4일 검색)YTN 2005-12-15 18:15...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 청소년 관련 공무원수와 예산, 유해업소 단속실적, 청소년 범죄 현황 등의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040190>(2007년 11월 4일 검색)... “그동안 대전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하고 각종 치안지표를 분석해 대도시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준비해 왔다”며 “다기능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차량 판독기를 확대해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 스피드화 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7406&tid=0&sid=E> (2007년 11월 4일 검색)..고객 만족도 계속 상승 = Q폴리스 도입 후 진주경찰서의 각종 치안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Q폴리스를 도입한 후 총범죄 발생건수, 총범죄 검거율, 112신고 후 순찰차 도착시간 그리고 교통사고사망사고 건수 등 주요 치안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08833>(2007년 11월 4일 검색)특히 충남청은 대도시인 대전을 대전청으로 이관시킨 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천안·아산, 서산·당진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13.2%나 낮아지는 등 주요치안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치안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01298&tid=0&sid=E>(2007년 11월 4일 검색) “치안수요 지역별 편차 심각하다” 2006-11-02 오후 2:57:26 계재 안경을 의원, 국감서 본지 보도 인용 대책마련 요구...경찰청 “경찰관서 표준인력 수요모델 용역 실시중”...치안수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경찰인력배치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경을 의원(사진)은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치안수요의 편차가 심해 경찰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됐다”며 “경찰청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냐”고 질의했다. ◆치안수요 분석해 인력재배치 해야 =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서 표준인력 수

안 지표,²¹⁾ 체감치안지표,²²⁾ 범죄발생률지표라는²³⁾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통계(수치)는 일종의 치안지표의 한 부분으로 이루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논의될 ‘5대 범죄’라는 용어와 개념은 이러한 치안지표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치안지표(민생치안지표, 주요 치안지표, 각종 치안지표 등)는 범죄발생통계(5대 범죄 혹은 7대 범죄)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요모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오는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경찰서 신설과 인력배치의 적정성 등 치안수요 분석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내일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일선 경찰서 업무부담 최대 14배 차’라는 제목으로 탄력적 경찰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내일신문 10월 30일자 1면 기사 참조) 안 의원은 또 “경찰이 지난 92년 이후 치안수요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별 치안수요를 어떻게 파악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경찰청은 답변을 통해 “해마다 경찰관서의 관할인구, 범죄발생건수, 112신고건수 등 주요 치안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인력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서별 인력배치가 치안수요와 전혀 맞지 않다. 이는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만 단순비교해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48명으로 가장 적다. 이에 반해 경기 용인경찰서는 1인당 1421명으로 남대문서의 29.6배에 이른다. ◆경찰관과 일반 행정직 분리 필요 = 안 의원은 “과다한 지원인력과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며 “선진 외국경찰처럼 경찰관과 일반행정직을 분리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순수한 집행분야는 경찰관이 맡고 행정지원 기능에는 단계적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 증원인력 688명 가운데 53.3%인 368명이 순수 일반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은 경찰인력 중 일반직 비중이 4%에 불과하다. 반면 선진 외국의 경우 일반직 비율은 영국이 34.3%, 미국(뉴욕)이 30.5%, 일본이 12.4%를 차지한다.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126813> (2007년 11월 4일 검색)- 범죄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법활동 전개 -범죄분석 및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강화구역’을 설정 등 전략적 방법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있음. 범죄 분석에 따라 전국적으로 4,249개소를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 각 요점 연계순찰 및 범죄특성을 감안한 예방전략을 수립, 시행한 결과, 100일 계획 시행 이후 범죄발생이 감소추세에 있는 등 민생치안 지표가 향상되고 있고, 범죄취약업소에 대한 정밀 방법진단 및 취약지역에 상설부대 등 경력을 집중 투입, 목표지향적 방법활동을 펼쳐 순찰근무 중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특히 편의점 협회측과 간담회를 통해 범죄 예방 CCTV 위치 조정 등 범죄예방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82056> (2007년 11월 4일 검색).....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법 집행을 공정히 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전있는 경찰상을 정립하겠으며 특히 체감치안의 지표가 되는 강도와 절도 예방과 검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3) 주간동아(기사입력 2007-07-18 09:30):파생상품의 경우 특정일의 강설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설계돼 투자자의 사업상 불가피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경비회사는 범죄발생률 지표와 연계한 파생상품으로 범죄율 증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제3절 치안성과지표로서 범죄통계활용의 문제점

‘5대 범죄’ 유형은 年間 500,00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절도와 폭력범죄가 대다수(96%)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폭력범죄가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폭력사건의 대부분은 面識관계에서 우발적(음주상태)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

<표 2-2> 최근 수년간의 5대 범죄발생 동향(1999-2006년)²⁴⁾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살인	976건	1,051건	998건	1,061건	1,073건
강도	4,972	5,692	7,292	5,170	4,838
강간	6,359	6,751	6,531	7,316	8,755
절도	89,395	180,704	187,352	188,780	192,670
폭력	282,274	338,045	294,893	285,363	281,969
합계	383,976	532,243	497,066	487,690	489,305

현행 □5대 범죄□라는 지표범죄상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유형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들은²⁵⁾ 시민들이나 경찰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중점적인 치안활동의 지표로서 활용가능하다. 그렇지만, 절도나 폭력범죄 유형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칫하면, 경찰활동의 평가과정에서 피해법익, 범죄의 질적 특성에 상관없이 왜곡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단돈 1,000원 안팎의 우유 한 통(500ml)을 절취한 절도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공식적 형사절차(수사, 기소 등)를 거치게 되고, 친구사이에 음주 후 우발적인 다툼이나 싸움도 폭행죄로 입건되면, 공식 범죄통계에 등재된다(registered).²⁶⁾

이처럼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들이 질적 특성에 상관없이 살인, 강도 및 강간범죄의 1건

24) 경찰청, 『경찰백서 2007』(서울: 경찰청, 2007), p. 122.

25) 2005년도 기준으로 살인 1,000여건, 강도 5,500여건 그리고 강간은 10,0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조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경찰청, 『경찰백서 2006』참조.

26) 이러한 사실들은 필자가 직접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사실이다.

과 동일한 통계치로 취급되고 있다. 살인범죄 1건, 인질강도 1건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찰력의 규모와 10만원짜리 자전거1대 절도사건이나 10만원 상당의 현금 소매치기 1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표범죄(index crime)들의 수치에만 집착하게 되면, 심각한 통계적 왜곡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분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대 범죄□를 중심으로 한 치안동향 분석은 범죄의 심각성, 質的 특성 및 범죄에 대한 공포감(fear or crime), 경찰력 투입의 필요성 여부를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범죄총량만을 제시할 수 있는 실정이다. 범죄유형간의 심각성이나 가중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수치로서만 비교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주요 일간신문에 보도된(2006년 11월 3일-2007년 11월 3일 까지) ‘범죄용어’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폭력: 1,149건, 폭행: 591건, 강도: 686건, 살인: 550건, 마약: 161건
 절도: 132건, 방화: 110건, 성폭행: 101건, 강간: 78건 이었다.

폭력, 폭행 및 성폭행 등은 상호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강간 및 성폭행 역시 범죄의 특성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5대 범죄’ 가운데,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한다.

살인, 강도, 강간범죄는 실제 발생건수에 비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대 범죄’의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방화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절도범죄만큼 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물론 상기의 사건보도관련 빈도(검색되는 용어)가 실제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만을 보도한 것은 아니며, 영화, 서적, TV프로그램, 과거의 사건, 판례 및 외국사건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사건 실태와 범죄의 질적/양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7)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상(kinds.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 결과(한겨레신문)를 활용한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뿐만 아니라, 소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명에 포함된 키워드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용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범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여러 건의 범죄의 경우, 다른 용어에 중복으로 검색되기도 한다.

체감치안 혹은 범죄발생통계와 같은 치안지표의 경우, 경찰당국이 인식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일반시민들은 대체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동향이나 치안지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동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관행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절도범죄의 경우, 범행대상(문화재절도, 교통표지판 절도, 맨홀 뚜껑 절도 등), 범행수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언론의 관심을 받게되는 바, 실제로 수많은 사건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방화범죄와 마약범죄의 경우, ‘5대 범죄’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때문에, 경찰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일반시민들은 마약범죄 및 방화범죄 보도경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범죄보도의 빈도와 범죄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의 정도는 별개의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과 같은 ‘5대 범죄’ 유형만으로 시민들이 경찰활동의 성과와 치안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제4절 현행 지표범죄관련 개념정의상 문제점

그동안 한국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활용하였던 범죄분류 방식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 경찰과 검찰 등 각급기관에서는 “주요범죄”,²⁸⁾ “중요범죄”,²⁹⁾ “5대 범죄”, “7대 범죄”,³⁰⁾ “민생침해범죄”,³¹⁾ “민생침해사범”,³²⁾ 심지어 “8대 민생침해사범”이라

28) 현행 경찰백서 등에서는 주요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면서,

29) 경찰통계연보상에서는 중요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기타형범범 등을 제시하고 있다.

30) 2000년 전후, CompStat프로그램을 도입하던 시기에 7대 범죄 분류방식을 도입한 바 있었다.

31) 경찰청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내용들 중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또한 경찰이 특정시기에 단기간에 걸쳐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 同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2) 한국일보 1998년 02월 11일자.....[경찰청]-어젯밤 전국 검문검색... 민생침해사범등 68명 구속... 경찰청은 민생침해사범...검거를 위해전국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 1천2백73명을 검거해 이중 강도짓을 벌인 이모군(18.주거부정) 등 68명을 구속하고 도난차량 63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된 형사범 중에는 기소중지자가 3백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범 2백14명, 절도범 32명, 강도, 강간범 1명이었으며 기타 교통법규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범도 6백92명이나 됐다;연합뉴스 2004년 11월 29일자 기사: 경제불황으로 ‘민생침해사범’ 단속 대폭 증가.....,어려운 민생경제를 반영하듯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서의 범죄 단속 건수가.....크

는 용어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부기관에서 편의적으로 수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개념 규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1. 경찰단계에서 지표범죄 활용실태와 개념상 혼란

일례로 경찰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경찰백서에서 사용되고 지표범죄와 관련 혼용사례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강절도등 민생침해범죄, 강력사범, 5대 범죄만 보더라도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방화를 포함시킨 것이 강력사범이다. 이런 정도라면 굳이 5대 범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방화를 포함시켜서, 강력사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표 2-3> 「경찰백서」상의 지표범죄관련 용어사용례

주요 범죄					
강절도등민생침해 범죄	조직폭력 범죄	학교폭력 범죄	사이버 범죄	민생경제침 해사범	마약류 사범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말 시작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8대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속건수가 단속 전에 비해 평균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이 지난 3개월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를 동참시키는 형태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가위’ 민생침해 사범 철저히 단속 지시.- 제수용품 매점매석 행위 등 집중 단속.... 법무부는 24일 추석명절 대목을 노린 제수용품 매점매석 또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판매, 제수용품 매점매석,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기타 부정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뉴시스] 2007년 04월 03일 충남경찰 조폭과의 전쟁.....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폭력조직 간의 세력과시를 둘러싼 유혈극이 벌어지면서 주민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가운데 대전, 충남지역에서도 경찰이 대대적인 ‘조폭’ 검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조폭과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정하고 전무후무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 토착폭력배는 물론 기업형 폭력조직까지 일망타진해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민생침해범죄특별단속	
경제사범	강력사범	5대 범죄	조직폭력
특경법, 사기 등 5건 이상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또한 경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보면, □5대 범죄□라는 분류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요 범죄지표 추이”, 최종별로(형법범 및 특별형법)분류하고 있다.³³⁾ 형법범에 대해서는 강력범, 지능범, 폭력, 절도, 기타, 풍속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형법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2-4> 경찰통계연보상의 지표범죄관련 용어사용례(2003년 경찰통계연보)

죄종별 구성	형 법 범					
	강력범계	지능범계 261,773	폭력계 435,664	절도계 61,651	기타 50,411	풍속계 42,477
살인계 1,085						
강도계 6,970						
강간계 5,425						
방화계 1,417						

<표 2-5> 유사용어의 출처와 내포하고 있는 범죄유형

강력사범 (경찰백서)	강력범 (경찰통계연보)	중요범죄 (경찰통계연보)	5대 범죄 (경찰백서)	민생침해사범 (경찰백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강력, 절도, 폭력, 기타 형법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5대 범죄+ 조직폭력

강력범, 강력사범 그리고 5대 범죄간의 구별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恣意的으로 사용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범죄유형들은 모든 분류기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방화, 절도, 폭력 등은 구체적 기준 없이 가감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混用되고 용어들 가운데, □중요범죄□라는 개념하에 살인, 강도,

33)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3』(서울: 경찰청, 2004), 129면 이하 참조.

강간, 방화, 폭력, 절도범죄 등 6개 범죄유형이 포함되는 지표범죄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2. 검찰단계에서의 지표범죄 활용과 개념상 혼란

한편 검찰청 등에서는 경찰과는 상이한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는 동향이다. 즉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분류하면서,³⁴⁾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력범죄 개념은 경찰에서 사용하고 강력범 및 폭력범을 합친 개념과 유사하다.

<표 2-6> 법무연수원 발행 「범죄백서」에 사용된 범죄분류사례³⁵⁾

형법범 범죄유형	강력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그런데,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범죄개념은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도범과 지능범을 합한 개념과 유사하다. 대체로 검찰은 형법각칙상의 죄명분류를 준거로 삼고 있지만, 경찰은 이와 다른 관점인 것 같다.³⁶⁾

최근 검찰에서는 “5대 강력범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5대 범죄”라는 개념과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5대 강력범죄에는

▷ 폭력(폭행·상해·감금·협박 등),

3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서울: 대검찰청, 2006), 16면 이하.

3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용인: 법무연수원, 2006), 32면 이하 참조.

36) 경찰의 경우, 대체로 가두범죄(Street Crime 혹은 Strassenkriminalitaet) 개념을 도입한다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 ▷ 흉악사범(살인·강도·보복범죄 등),
- ▷ 성폭력사건,
- ▷ 약취·유인,
- ▷ 방화·실화 등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범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⁷⁾

이와 관련, 최근 형사사건 기소율변화 추이(1997-2006년)가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형사사건 수치뿐만 아니라 이른 바 '5대 강력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심각한 범죄유형들을 동시에 상호비교,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³⁸⁾

37)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22020202769847&newssetid=746>(2007년%204월%2015(2007년 8월 26일 검색)

38)



제3장 각국의 치안성과지표 활용사례들

본항에서는 선진 각국 경찰의 치안정책에 활용되는 지표범죄사례를 파악,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낸다.

제1절 미국 사례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UCR (Uniform Crime Report)상의 지표범죄(Index Crime)로서 '8대 범죄'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표 3-1> 미국의 UCR상의 8대 지표범죄(Index Crime)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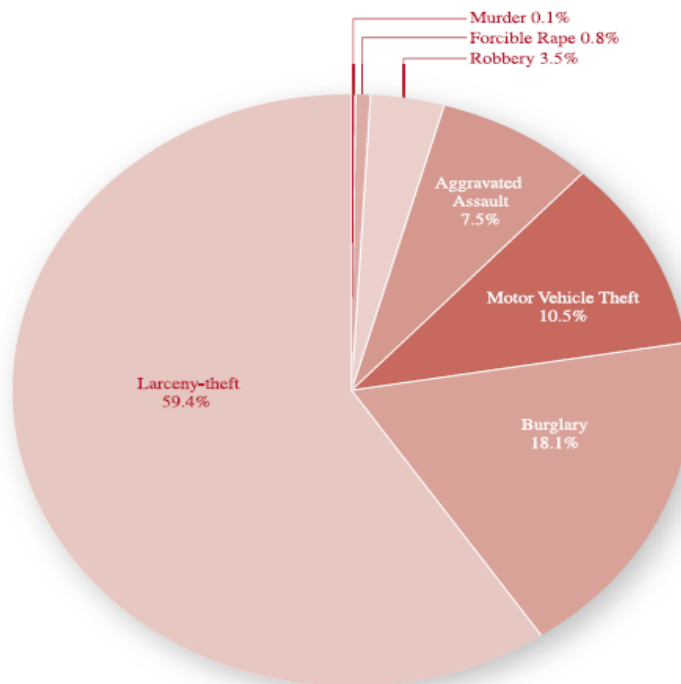
폭력범죄(Violent Crime) 유형	재산범죄(Property Crime)유형
Murder 16,204건 (0.1%) ⁴⁰⁾	Burglary (18.1%)
Forcible Rape 95,136건 (0.8%)	Larceny-Theft (59.4%)
Robbery 420,637건 (3.5%)	Motor Vehicle Theft (10.5%)
Aggravated assault 994,348건 (7.5%)	Arson(일부기관 보고수치 74,921건)
2002년 8대 범죄건수: 11,877,218건(폭력:1,426,325건, 재산:10,450,893건)	

다음 그림은 미국 FBI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UCR통계자료인 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일반)절도범죄 발생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⁴¹⁾

39)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2002: Uniform Crime Reports*, pp. 9-57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각범죄유형의 수치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40)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p. 19. 전체 '8대 지표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2001년의 경우, 살인사건은 16,037건이었다.

Crime Index Offenses
Percent Distribution⁴¹ 2002



<그림 3-1> FBI에서 발표하고 있는 UCR상의 지표범죄(Crime Index Offense, 2002)

제2절 영국 사례

영국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피해자 및 범죄동향(British Crime Survey: BCS)을 조사하여, 공식범죄통계상의 수치들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경찰당국에서는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에서 10여개 유형의 주요범죄들을 선정, 범죄감소 동향을 평가하고 공표하고 있다.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의 경우, □Policing London

41)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2002: Uniform Crime Reports*, p. 11.

Strategy 2006-09을 발표한 바 있다. 3년 동안 7개 치안영역에 걸쳐 중점적인 그리고 우선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매년 기본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안상황에 따른 약간의 정책수정도 병행하고 있다. 7가지 치안활동분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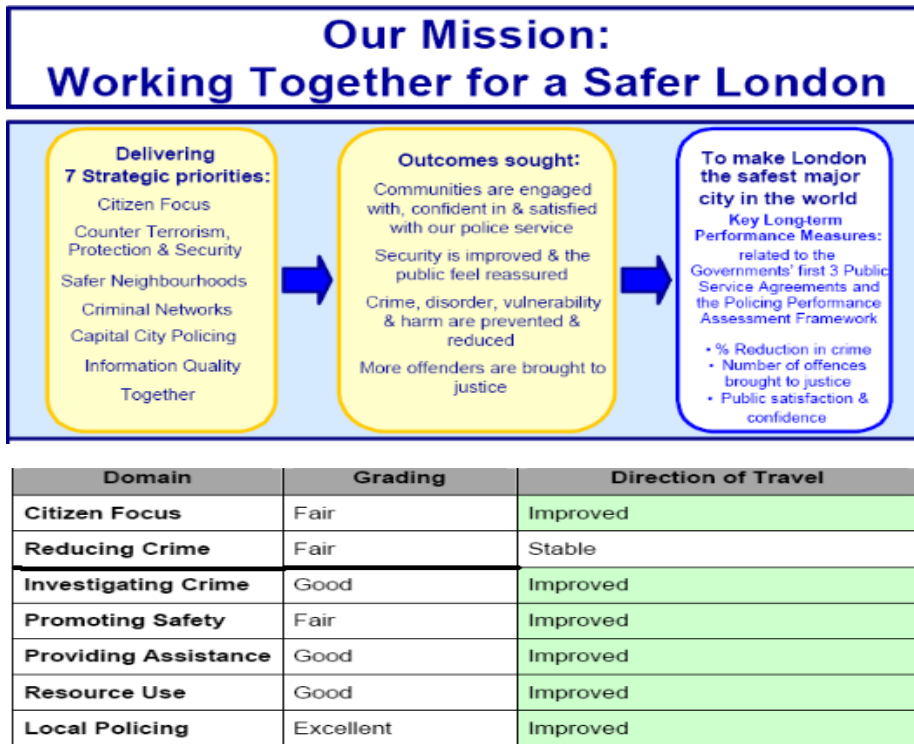
안전한 삶의 영역(Safer Neighbourhoods),
對테러활동 및 보안(Counter-Terrorism, security and protection),
범죄수사네트워크 구축(Criminal Networks),
수도치안활동강화(Capital City Policing),
정보의 공유 및 소통의 향상(Information Quality),
시민에게 초점을 둔 경찰활동(Citizen Focus),
경찰리더십의 향상(Improving the quality of leadership) 등이다.⁴²⁾

42) http://www.met.police.uk/about/plans.htm#pol_lon_strategy(2007년 12월 12일 검색)

Policing London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and
Metropolitan Police Service
Policing London Strategy for
2007- 10
and Policing Plan for
2007-08

<표 3-2> 영국 수도경찰청의 치안정책 개요 및 평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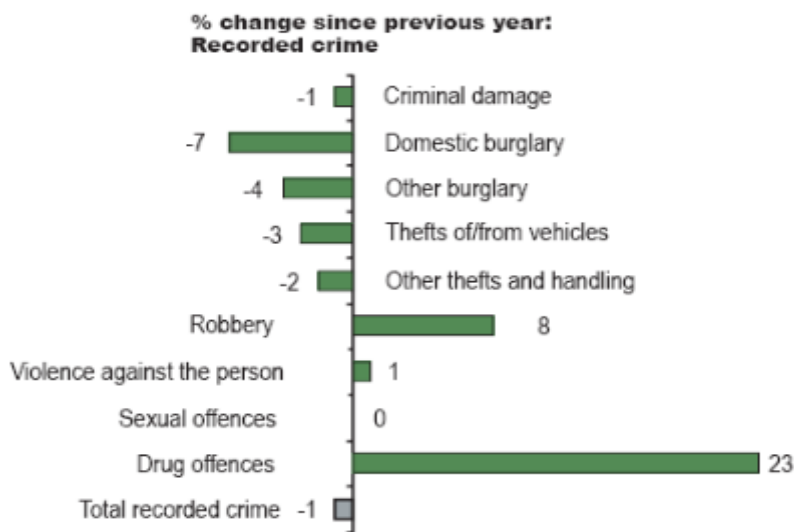


이러한 치안정책 수행과정에서 범죄감소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가지 범죄유형을 예시하면서 매년 범죄감소여부(Reduction in 10 British Crime Survey-BCS comparator)를 평가하고 있다. 치안정책의 평가지표로서 ‘10대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범죄로 인한 피해(손괴 및 방화, Criminal Damage),
- ▷ 주거침입절도(Domestic burglary)
- ▷ 기타침입절도(Other burglary)
- ▷ 자동차관련 절도범죄(Thefts of/from vehicles)
- ▷ 기타절도(Other thefts and handling)
- ▷ 강도범죄(Robbery),
- ▷ 폭력범죄(Violence against the person: 살인, 상해),

- ▷ 性범죄(Sexual offences) 그리고
- ▷ 마약관련 범죄(Drug offences) 등이다.⁴³⁾ 절도범죄유형을 세분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웨일즈경찰에서도 주요범죄 발생동향을 상기와 같은 '10대 범죄'유형 중심으로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치안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⁴⁴⁾ 즉 아래 그림과 같이 감소된 범죄유형들과 증가 내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범죄유형들을 對比하고 있다.



<그림 3-2>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주요범죄(10대 범죄)' 동향

한편, 영국 내무부가 주관이 된 전국적인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에서는 상기 '10대 범죄유형'과는 약간 다른 '8가지 大분류'하여 범죄통계를 수집, 작성,

43) □Policing London;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and Metropolitan Police Service Policing London Strategy for 2007-10 and Policing Plan for 2007-08□에 소개된 내용이다.

44) Home Office,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05-6: A Summary of the Main Statistics*, p. 3.

공표하고 있다.⁴⁵⁾ 절도범죄유형을 단순화한 것(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관련절도)이 특징적이다.

- ▷ 범죄로 인한 피해(Criminal damage)
- ▷ 주거침입절도(Domestic burglary)
- ▷ 마약관련범죄(Drug offences)
- ▷ 일반절도(Non-vehicle related theft)
- ▷ 강도범죄(Robbery)
- ▷ 性범죄(Sexual offences)
- ▷ 자동차관련범죄(Vehicle related theft)
- ▷ 폭력범죄(Violent crime) 등이다.

상기의 목적과 방식과는 약간 달리, 내무부에서는 개인 및 주거에 대한 범죄피해액 규모(대체로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 위주)를 金錢으로 환산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범죄로 인한 피해’를 ‘비용개념’으로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同내무부의 자료(매년 작성, 발표함)에 의하면, ‘7가지 범죄유형’으로 大분류하고 있다.⁴⁶⁾

- ▷ 폭력범죄(살인, 重상해, 輕상해-Homicide, Serious wounding, other wounding),
- ▷ 性범죄(Sexual offences),
- ▷ 일반폭행(Common assault),
- ▷ 강도(Robbery),
- ▷ 주거침입절도(Burglary in dwelling),
- ▷ 일반절도(對人절도, 自前거절도, 자동차절도, 기타 절도 등),
- ▷ 범죄로 인한 피해(criminal Damage, 손괴, 방화등) 등이며, 상기의 ‘8대 범죄유형’에서 ‘마약관련 범죄유형’이 제외된 것이다.

45) □Crime Statistics for England and Wales□ <http://www.crimestatistics.org.uk/output/Page109.asp>(2007년 12월 12일 검색)

46) 영국내무부 발간자료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2003/04□에서 인용함.

<표 3-3> 영국 내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안지표’ 관련 사례

Multipliers and estimated total number of offences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1999/00 and 2003/04						
	2000 revised			2003/04		
	Recorded	Multiplier Estimate	Estimated total	Recorded	Multiplier Estimate	Estimated total
Thousands of offences						
Violence against the person						
Homicide	1	1.0	1	1	1.0	1
Wounding						
<i>Serious wounding</i>	29	3.5	102	42	1.8	76
<i>Other wounding</i>	357	3.5	1,246	670	1.8	1,199
Violence total	387		1,350	714		1,277
Sexual offences	38	10.1	382	52	5.2	269
Common assault	194	13.1	2,546	242	7.7	1,851
Robbery	72	6.3	458	91	3.7	335
Burglary in a dwelling	443	2.9	1,263	402	2.2	880
Theft						
Theft from the person	76	8.6	655	125	4.6	576
Theft of a pedal cycle	131	2.9	386	103	3.6	365
Theft of vehicle	320	1.2	384	198	1.2	230
Theft from vehicle	566	3.7	2,072	450	2.8	1,249
Attempted vehicle theft	157	3.9	621	152	2.2	332
Other theft and handling	639	3.6	2,320	815	2.7	2,216
Theft total	1,890		6,440	1,843		4,968
Criminal damage	473	5.9	2,772	603	4.3	2,589
Total number of crimes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15,210			12,168

Estimated average costs of crimes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 2003/04 by crime type and by cost category

뿐만 아니라, 상기의 범치지표 가운데 ‘마약관련범죄’ 및 ‘범죄로 인한 피해지표’를 제외한 심각한 ‘6대 범죄’(Serious Crime) 유형만을 추출하여 인접한 각국들과⁴⁷⁾ 치안동향을 매년 비교하기도 한다. ‘6대 범죄’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 대인폭력범죄(살인-Homicide; 상해-Wounding)
- ▷ 강도(Robbery)
- ▷ 강간(Rape)
- ▷ 주거침입절도(Residence Burglary)
- ▷ 자동차절도(Vehicle Theft)

47) England and Wales, USA, Australia, Canada, Netherland, Scotland, Sweden 그리고 Switzerland와 비교하여, 매년 그 동향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치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동향이다.

▷ 심각한 폭행(Serious Assault) 등이다.

절도범죄를 약간 세분화한 점을 제외하면, 현행 한국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유형과 가장 유사한 분류방식으로 평가된다. 한국과는 달리, 절도범죄 유형을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절도범죄로 세분하여, 지표범죄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분류 방식보다 구체적이다. 따라서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의 통계수치가 갖고 있는 지표범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시사점이 된다할 것이다.

제3절 독일 사례

독일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BKA)과 연방내무부 경찰국(Abteilung P)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Sicherheitspolitik)과 치안지표 작성에 관여하고 경찰관들과 관련 학계 전문가를 접촉한 결과, 연방경찰에서는 매년 각급 州경찰로부터 범죄발생통계를 취합하여 「경찰범죄통계-Polizeiliche Kriminalistik:PKS」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는 총 6,304,223건이었다.⁴⁸⁾ 同분류시스템에 의하면,

- ▶ 폭력범죄(Gewaltkriminalitaet)
- ▶ 절도범죄(Diebstahlkriminalitaet: 41.3%)
- ▶ 사기범죄(Betrug 15%)
- ▶ 마약범죄(Rauschgiftsdelikte: 4.0%)
- ▶ 환경범죄(Umweltkriminalitaet) 등으로 大분류하고 있다.⁴⁹⁾

48)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일 검색). 2006년도 총범죄발생건수(형법 및 특별형법위반사범포함, 단 교통과실범죄와 국가적 범의침해사건은 제외)는 6,304,223건(2005년도 6,391,715건, 2004년의 경우, 6,633,156건이 발생)이었다. 참고로 2006년 12월 현재 독일 인구는 82,438,000명(2005년 12월, 82,501,000명)이었다.

49)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일 검색).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 범죄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 폭력범죄: 살인, 性폭행, 강도, 위험한 그리고 重상해죄
- ▶ (고의)輕상해(Vorsatzliche leichter Koerperverletzung)
- ▶ 가두범죄(Strassenkriminalitaet)
- ▶ 절도범죄(Diebstahl):자동차관련, 상점절도, 주거침입절도, 소매치기
- ▶ 사기범죄(Betrug)
- ▶ 손괴(Sachbeschaedigung)
- ▶ 모욕(Beleidigung)
- ▶ 경제범죄(Wirtschaftskriminalitaet)
- ▶ 컴퓨터범죄(Computerkriminalitaet)
- ▶ 횡령(Veruntreuungen)
- ▶ 파산관련범죄(Insolvenzstraftaten nach StGB)
- ▶ 채류, 망명 및 거주이전에 관한 EU법령위반
- ▶ 경쟁, 부패 및 독직관련범죄
- ▶ 총기등관련법령위반(Waffengesetz)
- ▶ 마약관련범죄(Rauschgiftdelikte)
- ▶ 환경관련범죄(Umweltkriminalitaet) 順으로 경찰범죄통계자료에서적시하고 있다.⁵⁰⁾

특히 폭력범죄에 重상해죄를 포함시키고, (고의)輕상해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0)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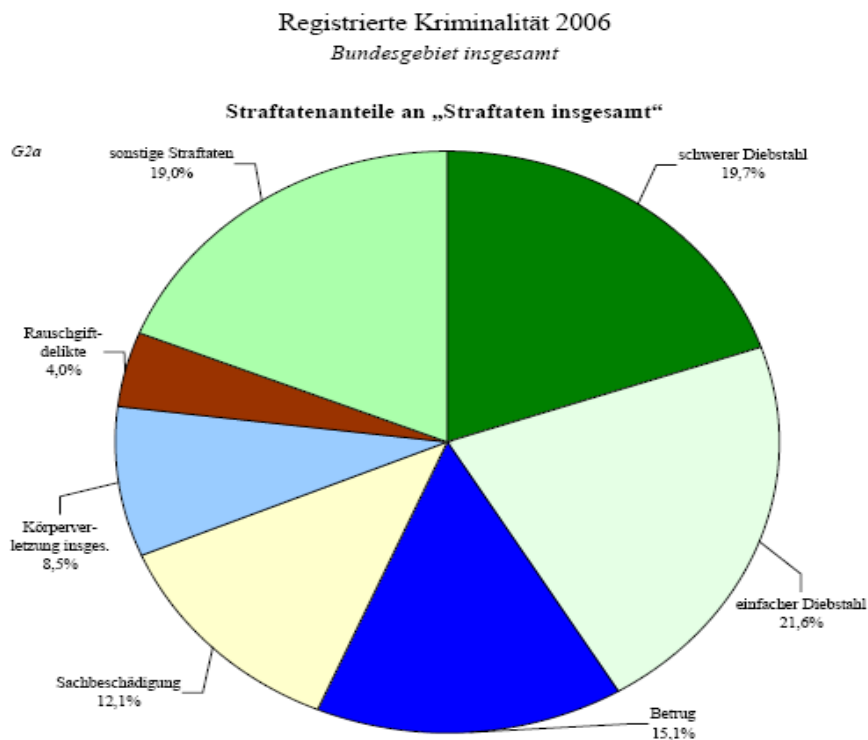
<표 3-4> 독일 경찰범죄통계상의 大분류 사례(PKS 2006) (Kurzinformation zur K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

Inhalt	Anzahl		Veränderung gg. Vorjahr		Anfallhäufigkeit in %	
	2006	2005	absolut	in %	2006	2005
Straftaten insgesamt						
erfasste Fälle	6 304 223	6 391 715	-87 492	-1,4		
aufgeklärte Fälle	3 492 933	3 518 567	-25 634	-0,7	55,4	55,0
<i>*Fortsetzung der insgesamt positiven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i>						
<i>**Neuer Höchststand der Gesamtaufklärungssquote seit 1964!</i>						
Gewaltkriminalität insgesamt	215 471	212 832	2 639	1,2	75,4	75,3
darunter:						
• Mord und Totschlag	2 468	2 396	72	3,0	95,5	95,8
<i>*Die vollendeten Fälle von Mord und Totschlag gingen um 77 (-2,6%) auf 727 zurück.</i>						
<i>**Bei den Versuchen hingegen wurde ein Anstieg von 189 (+9,4%) auf 1 741 Fälle registriert.</i>						
• Vergewaltigung und sexuelle Nötigung §§ 177 Abs. 2, 3 und 4, 178 StGB	8 118	8 133	-15	-0,2	82,9	83,7
• Einbildung	53 696	54 841	-1 145	-2,1	51,5	50,9
• gefährliche und schwere Körperverletzung	150 874	147 122	3 752	2,6	83,2	83,5
Verstöße gegen Körperverletzung	359 901	347 207	12 694	3,7	90,3	90,3
Straftatenspezifisch	1 557 626	1 621 978	-64 352	-4,0	17,3	16,4
Diebstahlkriminalität insgesamt	2 601 902	2 727 048	-125 146	-4,6	29,7	29,5
darunter:						
• von Kraftwagen	42 820	50 161	-8 041	-16,0	29,2	27,9
• von Fahrzeugen	368 308	391 335	-23 027	-5,9	10,2	9,6
• von anderen Zahlungsmitteln	111 987	113 086	-1 099	-1,0	10,2	10,1
• aus Kraftwagen	361 759	391 372	-29 613	-7,6	9,7	9,6
• Ladendiebstahl	437 896	461 293	-23 397	-5,1	92,6	93,2
<i>*Die Entwicklung wird im Wesentlichen durch Überwachungsmaßnahmen der Einzelhändler bestimmt.</i>						
• in/aus Dienst-, Büro-, Fabrikations-, Werkstatt- und Lagerräumen	117 000	119 205	-2 205	-1,8	21,0	20,5
• Wohnungseinbruchdiebstahl § 244 Abs. 1 Nr. 3 StGB	106 107	109 756	-3 629	-3,3	19,3	19,6
• Taschendiebstahl	100 984	110 552	-9 568	-8,7	6,2	5,4
Betrug insgesamt	954 277	949 921	4 356	0,5	83,8	83,1
darunter:						
• Waren- und Warenkreditbetrug	327 652	300 722	26 930	8,8	81,6	80,2
<i>*Der nochmalige Anstieg dürfte auf die Zunahme der Warenverkehrs im Internet zurückzuführen sein.</i>						
• Betrug mittels rechtswidrig erlangter Debitkarten ohne PIN (Kartenschwindeln)	41 561	48 143	-6 582	-13,7	53,1	48,7
<i>**Für den erneuten Rückgang dürfte die vermehrte Kontrolltätigkeit der Händler (Verlänger der Antritte) sowie Erfolge der Systeme KUNO (Kriminalitätsbekämpfung im sicheren Zahlungsverkehr unter Nutzung nichtpolizeilicher Organisationsstrukturen) wirksam sein.</i>						
• Betrug mittels rechtswidrig erlangter Kreditkarten	8 932	14 184	-5 252	-37,0	48,4	52,5
<i>*Siehe Anmerkung zuvor.</i>						
• Erbrechen von Leitzugern	194 174	192 930	1 244	0,6	98,7	98,3
<i>*Die Entwicklung wird im Wesentlichen durch Kontrollen der Verkehrsbehörden bestimmt.</i>						
• Kontenöffnungs- und Überweisungsbetrug	13 297	11 130	2 167	19,5	74,8	74,0
Sachbeschädigung	761 117	718 465	42 652	5,9	26,4	26,2
Belästigung	187 527	179 721	7 806	4,3	90,5	90,4
Wirtschaftskriminalität	95 887	89 224	6 663	7,5	96,4	95,4
Computerkriminalität	59 149	62 186	-3 037	-4,9	47,1	48,1

Inhalt	Anzahl		Veränderung gg. Vorjahr		Anfallhäufigkeit in %	
	2006	2005	absolut	in %	2006	2005
Verurteilungen	40 695	48 407	-8 712	-17,8	98,8	98,7
Inselverurteilungen nach StGB	6 032	6 704	-672	-10,0	99,6	99,2
Wettbewerbs-, Kartell-, Konsum- und Anordnungsstrafverfahren gegen das Aufenthaltsgesetz, das Asylverfahrens- und das Freizügigkeitsgesetz EU	161 149	165 935	-4 786	-2,9	98,7	97,6
darunter:						
• ausländische Einreise gemäß § 95 Abs. 1 Nr. 3 und Abs. 2 Nr. 1a AufenthaltG	40 680	41 883	-1 203	-2,9	99,4	99,1
Strafverfahren gegen das Waffengesetz	37 841	37 021	820	2,2	94,3	94,7
Kennzeichnungsverfahren insgesamt	215 619	216 740	-1 121	-0,5	94,7	94,3
nach Charakteren (Alkoholverbote gemäß § 29 StGB, Illegales Handeln und Illegales Handeln)						
• Haschisch	30 349	32 643	-2 294	-7,0	94,1	94,5
• Kokain	20 217	22 528	-2 311	-10,3	93,0	91,3
• Amphetamin, Methamphetamin und deren Derivate (Genoid, Ecstasy)	31 503	30 796	707	2,3	94,5	93,1
• Cannabis	148 667	166 144	-17 477	-10,5	91,4	91,4
<i>*Kennzeichnungsverfahren: Die registrierte Entwicklung im Bereich des Kartellrechts ist durch die Abnahme von Zahl und Inhalt beeinflusst.</i>						
Erwerbskriminalität insgesamt (StGB)	17 305	18 376	-1 071	-5,8	57,9	58,7
darunter:						
• wirtschaftliche Umgang mit gefährlichen Abfällen § 326 StGB sowie Abs. 2	10 689	11 802	-1 113	-9,4	57,3	59,0
<i>*Die registrierte Entwicklung ist durch die Ermittlungsmaßnahmen jenseits der Umweltbehörden gg. beeinflusst.</i>						

2006년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통계 가운데,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 ▷ 단순절도(21.6%),
- ▷ 중절도(19.7%),
- ▷ 손괴(12.1%),
- ▷ 상해(8.5%),
- ▷ 마약관련범죄(4.0%) 및
- ▷ 기타 범죄(19.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절도 및 폭력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약관련범죄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독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들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

폭력범죄와 절도범죄 유형을 제일 먼저 범죄통계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찰에서 폭력범죄유형에 포함시키는 단순 폭행협박(Noetigung und Bedrohung)과 같은 범죄 유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유형(Straftaten gegen die persoenliche Freiheit)으로 별도 처리하고 있는 바, 同부분도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라고 판단된다.⁵¹⁾

大분류된 폭력범죄(Gewaltkriminalitaet)에서는 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죄를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경찰에서 重상해(gefaehrliche und schwere Koerperverletzung) 및 輕상해(vor- saetzliche und leichte Koerperverletzung)로 상해죄를 세분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일 刑法 제224조, 225조 및 18조에 의거, 重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객관적 구성요건-objektive Tatbestadsmaessigkeit)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기능을 잃게 하는(Verlust) 행위
 - ▷ 중요한 사지(四肢, 팔, 다리 등)
 - ▷ 시력(Sehvermoegen)
 - ▷ 청력(Gehoer)
 - ▷ 말하는 능력(Sprach)
 - ▷ 몸동작(제스처) 혹은 생식능력(Gebaer- oder Zeugungsfahigkeit)

- ▶ 심각한 방법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훼손행위(Entstellung) 혹은

- ▶ 다음과 신체적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 ▷ 허약하게 만듦(Siechtum)
 - ▷ 마비(혹은 불수 Laehmung)
 - ▷ 정신병을 유발하는 것(Geisteskrankheit) 등이다.⁵²⁾

그 다음 大분류 범죄유형으로서 절도범죄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重 절도(Schwerer Diebstahl- schwerende Umstaende) 및 輕절도(Einfacher

51) 2005년도의 경우, 163,414건이 발생한 바 있다.

52) Gerke, Juergen, Strafrecht, 2. Auflage(Koeln: Kohlhammer, 1998), pp. 157-158.

Diebstahl-ohne schwerende Umstaende)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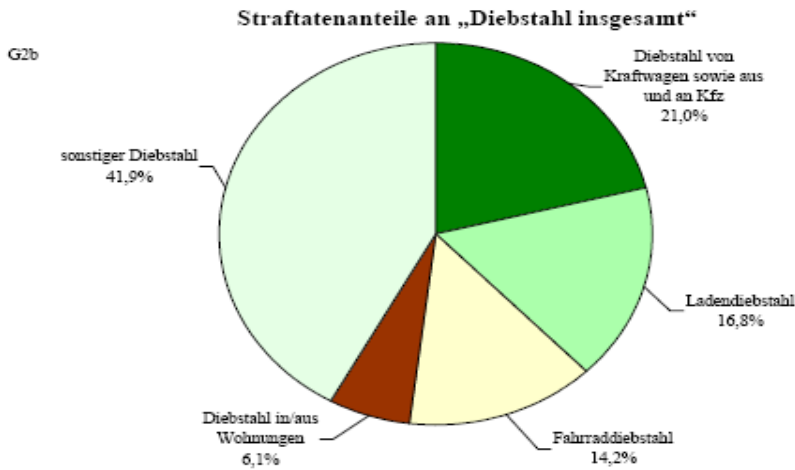
- ▶ 독일 형법 제242조에 의하면, 輕절도(혹은 단순절도)는 5年 이하 自由刑 혹은 罰金刑으로 처벌할 수 있다(未遂도 처벌).
- ▶ 그렇지만 동법 제243조의 重절도 유형(특별히 심각한 절도유형-§243 Besonders schwerer Fall des Diebstahls)에 속하는 경우, 3月 이상 10年 이하 自由刑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구체적 행위유형 및 절도객체(구성요건)는 다음과 같다.
 - ▷ 건물, 사무실 혹은 상업적 공간 혹은 타인의 폐쇄된 공간을 침입하거나, 올라가거나, 위조된 열쇠 혹은 특별한 공구를 집어넣어서 적법하지 않게 문을 열어서 들어가거나 혹은 비밀리에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 ▷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폐쇄된 보관장치 혹은 다른 안전장치를 통하여 특별히 안전하게 된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 ▷ 營利를 목적으로 절취하는 경우,
 - ▷ 교회 혹은 다른 종교적 수련에 사용되는 건물이나 공간으로부터 예배에 헌정된 혹은 종교적 숭배에 사용되는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 ▷ 학문, 예술 혹은 역사적 목적을 위하여 혹은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물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박물관(진열실)에서 볼 수 있는 혹은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 ▷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지할 데 없는 상황, 불행한 일 혹은 공공의 위험을 이용하여 절취하는 경우,
 - ▷ 취득하는 데 있어서, 武器法에 의하여 소지허가가 필요한 휴대화기, 기관총, 자동권총, 완전자동소총 혹은 半자동소총 혹은 전쟁무기통제법에 의거한 전쟁무기에 포함되는 폭발물 혹은 폭발물을 절취하는 경우,
 - ▷ 이상의 물건들 중 가치가 적은 것들(geringwertige Sache)은 重절도범죄에서 제외된다.
- ▶ 그보다 더 심각한 절도범죄유형(동법 제244조)에 대해서는 6月 이상 10年 이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 ▷ 흉기 혹은 위험한 工具를 사용한 절도(Diebstahl mit Waffen),
- ▷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als Mitglied einer Bande) 절취하는 경우(Bandendiebstahl),
- ▷ 주거침입절도(Wohnungseinbruchdiebstahl)⁵³⁾ 이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절취하는 경우(제 244조a: § 244a Scherer Bandendiebstahl)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⁵⁴⁾

또한 절도범죄 유형을 對象 및 手法을 기준으로 자동차절도, 상점절도, 자전거절도, 주거침입절도, 소매치기 등 기타 절도범죄로 세분하고 있다.⁵⁵⁾



<그림 3-5> 독일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절도범죄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

53) 주거에 침입하거나, 기어 올라가거나, 위조된 열쇠로 혹은 공구를 이용하여 불법하게 문을 열어 침입하여 혹은 주거에 몰래 들어가서 있다가 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54) Otto, Harro, *Grundkurs Strafrecht-Die einzelnen Delikte*, 5. Auflage(Berlin et al.: Walter de Gruyter, 1998), pp. 162-174; Schmidt, Rolf/Seidel, Stephanie, *Strafgesetzbuch -Besonderer Teil II-Vermögensdelikte*, 3. Auflage(Bremen: Verlag Rolf Schmidt, 1999), pp. 30-58; <http://dejure.org/gesetze/StGB/244a.html>(2007년 12월 12일 검색).

55)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일 검색)

다음 내용은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범죄통계자료인 바, 폭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重상해, 輕상해) 그리고 절도범죄(重절도 및 輕절도) 발생건수 및 해결된 사건 통계치(2006년 및 2005년)를 제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한국의 '5대 범죄' 유형과 유사한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⁵⁶⁾

<표 3-5>독일경찰이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폭력범죄와 절도범죄 사례⁵⁷⁾

폭력범죄		절도범죄
2006년	살인 2,468건 성폭행 및 강간 8,118건 강도 53,696건 상해: 重상해-150,874건 輕상해- 383,463건	(2,601,902건/전체범죄의 41.3%) 자동차절도 21.0% 상점절도 16.8% 자전거절도 14.2% 주거침입절도 6.1% 소매치기 등 기타 41.9% 重절도 1,239,287건 輕절도 1,362,615건
2005년	살인 2,396건 성폭행 및 강간 8,133건 강도 54,844건 상해:重상해-147,122건 輕상해-347,207건	(2,727,048건/전체범죄의 42.6%) 자동차절도 21.8% 상점절도 16.9% 자전거절도 14.4% 주거침입절도 5.9% 소매치기 등 기타 41.1% 重절도 1,311,518건 輕절도 1,415,530건

56) 한국의 단순폭행, 협박범죄들을 별도로 분류하면, 독일식과 가장 유사하다고 본다.

57) <http://www.bka.de/pks/pks2005/index2.html>; <http://www.bka.de/pks/pks2006/index2.html>(2007년 11월 25일 검색)

제4절 일본 사례

일본 경찰에서는 刑法犯과 特別法犯으로 구분하면서, 포괄범죄와 업무상과실범죄를 세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범죄유형에 해당하는 분류방식으로는 흉악범, 조폭범, 절도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법범으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일본경찰의 사례는 한국의 「경찰통계연보」상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표범죄와 거의 동일한 실정이다.

<표 3 -6> 일본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범죄 사례⁵⁸⁾

흉 악 범	粗 暴 犯	절 도 범	지 능 범	풍 속 범	기타형법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사기, 횡령위조, 배임등	도박등	

제5절 캐나다 사례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우선순위(Priorities)를 두고 있는 치안정책의 방향을 파악, 이를 한국경찰에 소개한다. 현재 캐나다 연방경찰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조직범죄(Organized Crime), 테러리즘(Terrorism), 청소년범죄(Youth), 경제범죄(Economic Integrity)유형등이며, 원주민공동체와의 유대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캐나다 경찰의 지표범죄 분류와 치안정책 방향 동향에 대해서 적실한 자료를 찾아낸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에서 작성 배포하고 있는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大분류한 범죄유형은 대체로

- ▶ 폭력범죄(Crimes of Violence)와
- ▶ 재산범죄(Property Crimes),
- ▶ 기타범죄,

58) (일본) 경찰청, 「平成 15년판 警察白書」(동경: 경찰청)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 ▶▶ 연방범위범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발생계수(인구 100,000명당 범죄발생건수)를 활용하고 있다.⁵⁹⁾

<표 3-7> 캐나다 연방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죄발생통계 사례

Canada	
	rate per 100,000 population
All incidents	8,269.0
<i>Criminal Code</i> offences (excluding traffic offences)	7,518.5
<u>Crimes of violence</u>	951.2
Homicide	1.9
Attempted murder	2.6
Assaults (level 1 to 3) ¹	734.8
Sexual assault	67.9
Other sexual offences	8.6
Robbery	94.1
Other crimes of violence ²	41.4
<u>Property crimes</u>	3,587.6
Breaking and entering	767.8
Motor vehicle theft	487.2
Theft over \$5,000	52.3
Theft \$5,000 and under	1,888.8
Possession of stolen goods	107.7
<u>Frauds</u>	283.8
Other <i>Criminal Code</i> offences	2,979.7
<i>Criminal Code</i> offences (traffic offences)	367.7
Impaired driving	227.9
Other c.c. traffic offences ³	139.9
Federal statutes	382.8
<u>Drugs</u>	294.8
Other federal statutes	88.1

이를 좀 더 세분하면

폭력범죄유형(Crimes of Violence)에는

- ▶ 살인, 살인미수,

59) 캐나다 연방통계청자료(2006년도 발생한 범죄통계) <http://www40.statcan.ca/101/cst01/legal04a.htm>(2007년 11월 25일 검색)

- ▶ 강도(Robbery),
- ▶ 폭력(level 1 to 3),
- ▶ 性폭행, 기타 性범죄,
- ▶ 기타 폭력범죄 유형이다.

재산범죄유형(Property Crimes)에는

- ▶ 주거침입절도,
- ▶ 자동차절도,
- ▶ 재산가치 5,000달러이상 절도,
- ▶ 5,000달러 미만 절도,
- ▶ 장물소지,
- ▶ 詐欺 등(마약범죄 및 기타 연방법위반죄)으로 세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유형과 비슷한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살인(살인미수포함), 강도, 강간(성폭행포함), 폭력범죄를 지표범죄화 하고 있으며, 절도범죄를 세분하고 있는 점(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재산가치에 따른 세분-5,000달러기준)은 시사하는 바가 높다할 것이다.

<표 3-8> 캐나다의 지표범죄에 소개되고 있는 범죄유형들

폭력범죄(Crimes of violence)	재산범죄(Property crimes)
살인(Homicide)	주거침입절도(Breaking and entering)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폭행(Assaults: level 1 to 3) ⁶⁰⁾	5,000달러 이상 절도범죄(Theft over \$5,000)
성폭행(Sexual assault)	5,000달러 이하 절도범죄(Theft \$5,000 and under)
기타 性범죄(Other sexual offences)	장물범죄(Possession of stolen goods)
강도(Robbery)	사기범죄(Frauds)
기타 폭력범죄(Other crimes of violence ²⁶¹⁾)	

60) 이른 바 □1단계 폭행(“Assault level 1”)□이라 함은 첫 번째 등급의 폭행을 의미한다. 同意없이 힘(완력)을 고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겠다는 시도 혹은 협박,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혹은 방해하면서 외부에 드러나도록 무기를 휴대(혹은 가짜 무기)하

한편 캐나다 밴쿠버경찰청(Vancouver Police Department)에서는 매년 치안성적을 시민들에게 공표하면서, 치안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경경찰청에서는 주요범죄 발생동향을 前年度와 비교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범죄유형들은 연방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폭력범죄(살인, 살인미수, 성범죄, 폭행, 유괴, 강도),
- ▷ 재산범죄(주거침입, 자동차절도, 5,000달러 이상 절도, 5,000달러미만 절도, 장물 소지, 사기, 방화),
- ▷ 기타 범죄(매춘, 불법도박, 공격적 무기소지),
- ▷ 마약범죄(헤로인, 코카인, 대마, 기타약물),
- ▷ 교통경찰활동(음주운전, 교통사고-심각한 사고, 일반사고 그리고 자동차파손 등) 등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경찰제도가 이른 바, 분권화 혹은 지방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어서, 해당 경찰관서별로 치안정책의 중점을 달리 설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2005	2006	% Change
	YTD	YTD	2006-2007
VIOLENT CRIME	7,514	7,971	6.1%
Homicide	19	15	-21.1%
Attempted Murder	17	13	-23.5%
Sexual Offences	535	528	-1.3%
Assaults	5,411	5,775	6.7%
Abduction	10	8	-20%
Robbery	1,522	1,632	7.2%
PROPERTY CRIME	52,287	49,736	-4.9%
Break & Enter	8,372	8,655	3.4%
Theft of Vehicle	5,742	4,339	-24.4%
Theft Over \$5,000	649	526	-19%
Theft Under \$5,000	28,504	26,784	-6%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1,862	1,507	-19.1%
Fraud	1,865	2,160	15.8%
Arson	225	302	34.2%
Mischief Over & Under \$5,000	5,068	5,463	7.8%
OTHER CRIME	10,115	12,230	20.9%
Prostitution	363	285	-21.5%
Gaming and Betting	4	1	-75.0%
Offensive Weapons	1,393	1,611	15.6%
Other Criminal Code	8,355	10,333	23.7%
DRUGS	4,803	5,183	7.9%
Heroin	390	566	45.1%
Cocaine	2,047	2,376	16.1%
Cannabis	1,823	1,638	-10.1%
Other Drugs	543	603	11.0%

는 행위가 포함된다.

- 61) 불법적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야기하기는 것, 고의로 총기를 발사하는 것, 납치, 경찰관에 대한 폭행 다른 법집행공무원 혹은 질서유지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기타 폭행행위들이 포함된다.

TRAFFIC ENFORCEMENT	2,429	2,171	-10.6%
Dangerous Operation of *MV	51	39	-28.2%
Impaired Operation of MV	2,065	1,778	-13.9%
Fail/Refuse Breath/Blood Sample	112	167	49.1%
Fail to Stop/Remain at Scene	106	121	13.1%
Driving while Prohibited	94	66	-29.8%
TRAFFIC ACCIDENTS	2,878	2,637	-8.4%
MV – Fatal	32	20	-37.5%
MV – Non-Fatal	2,030	1,374	-32.3%
Property Damage	817	1,243	52.1%
TOTAL INCIDENTS	80,026	79,928	0.0%

¹ 2005 & 2006 data run on 2007/03/13

These statistics are produced using the "all offence scoring method."

NOTE: Small offence numbers make large percentage changes.

Statistics quoted may differ from last year's report due to ongoing investigations and the timeliness of when police reports were submitted.

**MV – Motor Vehicle

<그림 3-6> 캐나다 벤쿠버경찰청의 지표범죄 활용동향

제4장 바람직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실증조사

일반시민들과 경찰관들의 치안지표에 대해서 인식도와 언론(주요 일간지) 보도에 나타난 범죄사건 기사의 빈도를 각각 조사, 분석하였다.

제1절 일반시민 및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통계 및 치안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반시민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시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172, 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On-Line)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인식비교를 위한 경찰관의 경우는 경찰종합학교(부평소재)의 경사기본교육과정 379명, 지역경찰관리자과정 45명(경위급)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시민의 경우 선정된 326명의 표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총 311명의 응답을 추출하였으며, 경찰관의 경우 선정된 424명의 표본 중에서 유의미한 총 363명의 응답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내용은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범죄지표에 대한 인식과 각각의 집단에 따른 개별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우리나라 현행 범죄지표에 대한 인식,
- 3) 우리나라 현행 범죄지표에 대한 적정성,
- 4) 향후 치안성과지표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정된 일반시민 311명과 경찰관 363명의 분석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4개 영역의 조사항목 중 치안지표와 관련한 49개의 세부문항에 대하여,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개별내용의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집단 간에 비교 분석과 개별문항의 응답에 따른 응답을 검토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의 한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치안지표에 대한 검토는 범죄지표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설문지만으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그 성격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일반시민의 경우 연령 및 성별이 어느 정도 비교하기 적절한 5:5의 비율이지만, 경찰관의 경우 경사와 경위계급에 집중되어있고, 연령과 성별의 비율이 일반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경찰관들 모두를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려면 집단 간의 성격이 동일해야 하는데, 일반시민과 경찰관은 집단 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조건 때문에 유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시민과 경찰관이 인식하고 있는 치안지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산술적 차이점만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제2절 경찰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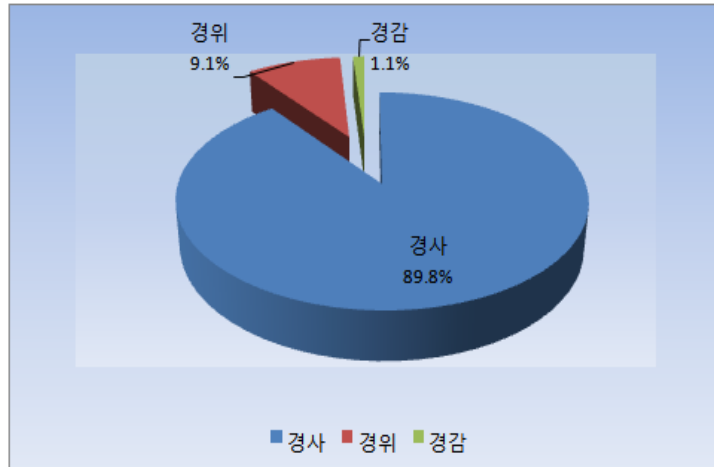
<표 4-1>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경우 조사대상자 311명 중 男子는 161명(51.8%), 女子는 150명(48.2%)으로, 性別 구성이 5:5의 비율로 거의 일치하는 반면, 경찰관의 경우 男子는 356명(98.0%), 女子경찰관은 7명(2.0%)로 직업적 특성상 비율에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일반시민의 경우, 20대가 21.6%, 30대가 47.0%, 40대가 28.6%, 50대는 2.9%이며, 경찰관의 경우 30대는 13.8%, 40대는 75.5%, 50대가 9.6%이다.

<표 4-1> 조사대상자(경찰/시민)의 성별과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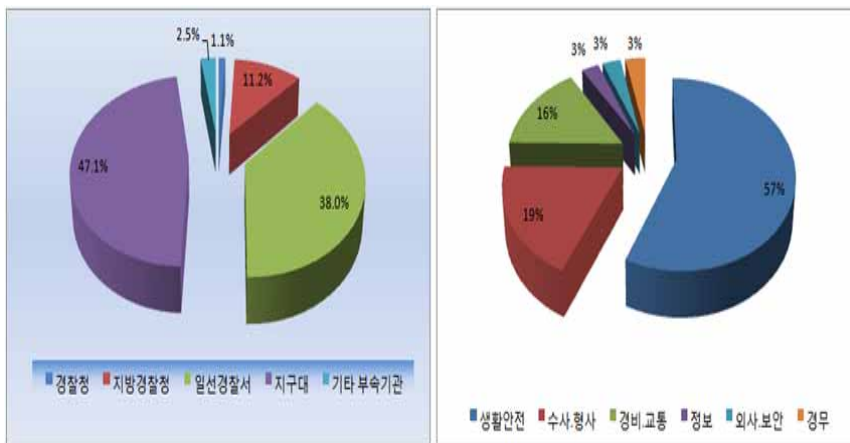
구 분		일반시민	경찰관
성 별	남	161(51.8)	356(98.0)
	여	150(48.2)	7(2.0)
	합계	311(100.0)	363(100.0)
연 령	20대	67(21.6)	-
	30대	146(47.0)	50(13.8)
	40대	89(28.6)	274(75.5)
	50대	9(2.9)	35(9.6)
	합계	311(100.0)	363(100.0)

위의 응답자 중에서 경찰관의 계급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警査 89.8%, 警衛 9.1%, 警監 1.1%이다. 일선경찰에서 범죄와의 직접적인 접촉빈도가 높은 경사, 경위계급이 主응답자임을 밝힌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에서 경찰관의 경우 性比나 계급과 관련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4-1>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계급분포

<그림 4-2>는 경찰관의 근무기관과 근무부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무기관은 지구대가 47.1%, 일선경찰서가 38.0%로 가장 비율이 높고, 근무부서 역시 생활안전과가 57%, 수사·형사과가 19%의 높은 비율로 응답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범죄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치안지표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는 주된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2> 조사대상 경찰관의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2. 치안성과지표의 인식에 대한 분석

아래의 <표 4-2>는 경찰관의 치안성과지표 용어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치안지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잘 안다(32.2%)’와 ‘잘 안다(6.6%)’를 더한 수치 38.8%와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38.6%로 서로 간에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났으며, 각각의 지표가 사용되는 출처에 대한 인식도 알고 있다⁶²⁾는 응답(48.5%)과 ‘그저 그렇다(39.4%)’로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현행 치안성과지표의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시민의 경우, ‘모르고 있다’(59.8%)라는 응답이 절반이 훨씬 비율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지표가 사용되는 출처에 대한 인식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7.7%로 나타나 일반시민들은 경찰관들 보다 현행 치안성과지표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뚜렷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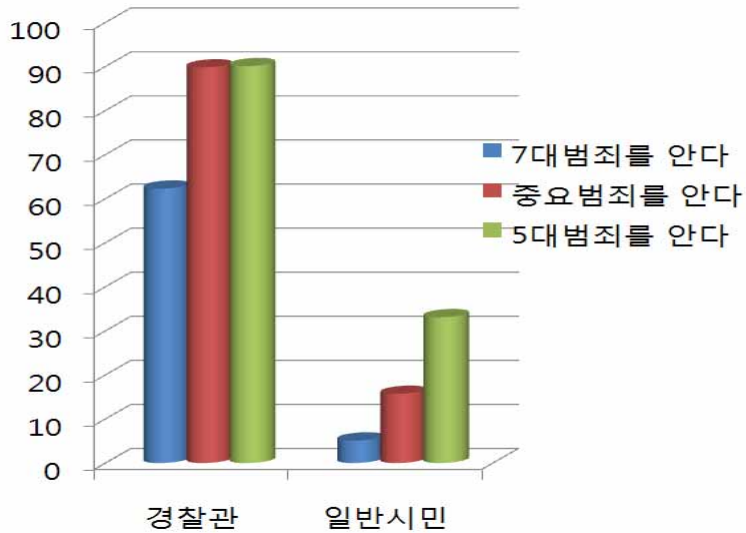
반면에 경찰관들의 경우,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대 범죄’와 ‘중요범죄’가 각각 같은 9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7대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간 낮은 수치인 62.3%로 응답하고 있다. 세 가지 치안지표관련 용어들 중에 ‘7대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지표 이해도 순위는 7대 범죄< 중요범죄< 5대 범죄 순이다.

한편, 치안지표들과 관련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33.1%,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15.7%의 비율로 ‘잘 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이 각종 치안지표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경찰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7대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5.1%로 나타나는 등 아래의 세 가지 치안지표관련 용어들 중에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경찰활동이나 치안성과지표, ‘중요범죄’, ‘5대 범죄’, ‘7대 범죄’라는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혹은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 같

62) ‘알고 있다’의 인식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잘 안다’의 비율의 합계로 측정함.

다. 대체로 이러한 용어들은 언론기관의 보도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치안지표들에 관한 경찰관/일반시민들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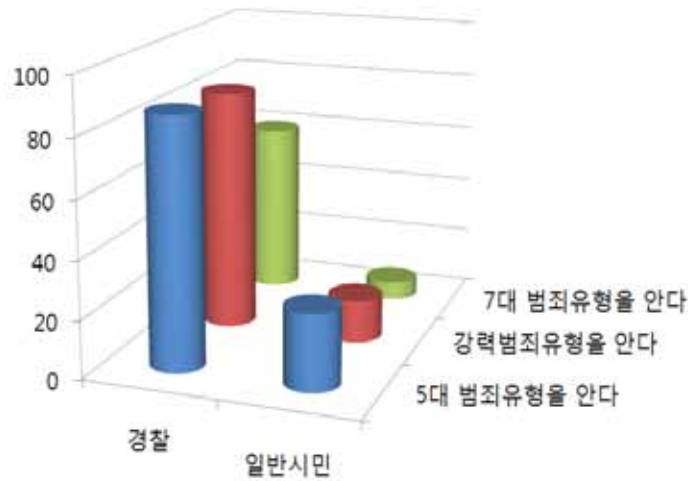
경찰관들의 경우, ‘중요범죄(44.6%)’라는 용어에 관해 이해하는 비율보다 ‘5대 범죄(59.8%)’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잘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기준). 이는 실무상(공문서 등) 경험 혹은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공식문헌들(경찰백서)을 통하여 ‘5대 범죄’라는 치안지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평소 친숙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은 여러 종류의 치안성과 지표들 중에서 ‘5대 범죄’라는 용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경찰관 및 시민들의 치안성과지표 용어에 대한
인식정도**

	구 분	모른다	거의 잘 모른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안다	잘 안다	계
한국의 치안성과지표	경찰	15 (4.1)	67 (18.5)	140 (38.6)	117 (32.2)	24 (6.6)	363 (100.0)
	일반시민	68 (21.9)	118 (37.9)	109 (37.9)	14 (4.5)	2 (0.6)	311 (100.0)
'중요범죄' 용어의 의미	경찰	1 (0.3)	10 (2.8)	25 (6.9)	165 (45.5)	162 (44.6)	363 (100.0)
	일반시민	55 (17.7)	100 (32.2)	107 (34.4)	43 (13.8)	6 (1.9)	311 (100.0)
'5대 범죄' 용어의 의미	경찰	1 (0.3)	10 (2.8)	25 (6.9)	110 (30.3)	217 (59.8)	363 (100.0)
	일반시민	35 (11.3)	78 (25.1)	95 (30.5)	94 (30.2)	9 (2.9)	311 (100.0)
'7대 범죄' 용어의 의미	경찰	5 (1.4)	30 (8.3)	102 (28.1)	111 (30.6)	115 (31.7)	363 (100.0)
	일반시민	68 (21.9)	118 (37.9)	109 (35.0)	14 (4.5)	2 (0.6)	311 (100.0)
각 지표의 출처	경찰	6 (1.7)	38 (10.5)	143 (39.4)	124 (34.2)	52 (14.3)	363 (100.0)
	일반시민	55 (17.7)	109 (35.0)	128 (41.2)	17 (5.5)	2 (0.6)	311 (100.0)

다음의 <표 4-3>은 위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응답자들 중에서도 용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즉 각각의 범죄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죄유형들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질문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각 지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들이나 구분기준을 '잘 안다'라고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5대 범죄'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력 범죄(43.5%)', '7대 범죄(2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시민의 경우 각 지표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이나 구분기준을 '잘 안다'라고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5대 범죄'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력 범죄(14.8%)', '7대 범죄(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치안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들에 대한 인식

그러나 <표 4-2>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치안성과지표들에 대하여 인식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3가지 종류의 치안지표들 가운데, '5대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표들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따르면, 일반시민들도 치안지표들 가운데, '5대 범죄'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기관이나 매체를 통하여 사용되는 각각의 치안지표들의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 경찰관들이 '모르고 있다'⁶³⁾ 응답한 비율은 27.8%이며,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8%로 분석되어, 상호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42.4%)'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했을 때에도 뚜렷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경찰관 응답자의 상당부분이 각 치안지표의 사용기준을 제대로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경우도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그마치 56.3%로 나타났다. 즉 일반시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 치안성과지표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

63)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잘 모른다'와 '모른다'의 비율의 합계로 추정한다.

하여 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겨우 1.9%로서, 일반시민의 대다수가 각 지표의 사용 기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용어에 대한 인식과 범죄유형에 대한 구별 인식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표 4-3> 치안성과지표들에 대한 구체적 인식정도 비교

	구 분	모른다	거의 잘 모른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안다	잘 안다	계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	경찰	12 (3.3)	12 (3.3)	36 (9.9)	145 (39.9)	158 (43.5)	363 (100.0)
	일반시민	55 (17.7)	114 (36.2)	96 (30.9)	43 (13.8)	3 (1.0)	311 (100.0)
‘5대 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	경찰	3 (0.8)	10 (2.8)	38 (10.5)	115 (31.7)	197 (54.3)	363 (100.0)
	일반시민	43 (13.8)	81 (26.0)	105 (33.8)	72 (23.2)	10 (3.2)	311 (100.0)
‘7대 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	경찰	7 (1.9)	32 (8.8)	106 (29.2)	113 (31.1)	105 (28.9)	363 (100.0)
	일반시민	72 (23.2)	100 (32.2)	119 (38.3)	18 (5.8)	2 (0.6)	311 (100.0)
각 지표의 사용기준 구분	경찰	27 (7.4)	74 (20.4)	154 (42.4)	83 (22.9)	25 (6.9)	363 (100.0)
	일반시민	59 (19.0)	116 (37.3)	102 (32.8)	32 (10.3)	2 (0.6)	311 (100.0)

3. 치안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가. 지표기준의 적합성 여부

범죄통계를 측정하는데 있어 범죄유형에 따라서 범죄건수도 다르게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간의 범죄 건수 기록방식이 달라서 前者는 행위중심이고 後者는 피해자 숫자를 중심으로 범죄건수가 기록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 5명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는 폭행 5건(실체적 경합)으로 기록되지만, 같은 상황에서 5명에게 절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절도 1건(계속범)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기록이

범죄통계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른 통계 측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7대 범죄'에 포함되는 마약범죄와 방화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치안성과지표를 대표하는 범죄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질문에 포함하였다.

아래의 <표 4-4>는 치안성과지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한 표(表)이다. 경찰관들은 폭력범죄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46.6%로서 '적합하다(38.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범죄의 경우도 '적합하지 않다(47.7%)'는 응답이 '적합하다(31.4%)'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산통계를 사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은 45.1%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은 폭력범죄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47.7%로서, '적합하다(25.4%)'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절도범죄의 경우도 '적합하지 않다(36.6%)'는 응답이 '적합하다(29.6%)'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지 항목 모두에서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38.9%, 20.7%로 나타나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범죄행위의 輕·重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크게 유의미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과 함께, '합산통계를 사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32.8%로 나타났다.

한편, '7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방화범죄와 마약범죄가 대표적인 범죄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제시되었다. 방화범죄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60.6%, 일반시민들의 6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 바,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마약범죄의 경우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로 인식되어, 선진 각국에서도 범죄지표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조사대상 경찰관의 69.1%, 일반 시민의 45.4%가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화범죄와 마약범죄가 향후 '범죄지표'의 개선에 있어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⁶⁴⁾

64) 단, 치안성과지표의 대표지표로써 '7대 범죄'를 고려했을 때에 방화범죄와 마약범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5대 범죄'나 '중요 범죄'등 다른 범죄지표를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그러나 합산통계의 측정에 있어서는 각 범죄유형에 따라 합산통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경찰관의 경우 45.1%, 일반시민의 경우 61.9%이었다. 범죄유형을 구분하여 대표 범죄지표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도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경찰관 71.8%, 일반시민 66.6%로서 매우 높은 비율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4> 치안성과지표 기준의 적합성에 인식

	구분	매우 부정	다소 부정	중립	다소 긍정	매우 긍정	계
폭력범죄 기준의 적합성	경찰	50 (13.8)	119 (32.8)	83 (22.9)	83 (22.9)	28 (15.2)	363 (100.0)
	일반시민	13 (4.2)	98 (31.5)	121 (38.9)	64 (20.6)	15 (4.8)	311 (100.0)
절도범죄 기준의 적합성	경찰	55 (15.2)	118 (32.5)	75 (20.7)	81 (22.3)	33 (9.1)	363 (100.0)
	일반시민	25 (8.0)	90 (28.6)	104 (33.0)	77 (24.8)	15 (4.8)	311 (100.0)
방화범죄의 심각성 정도	경찰	4 (1.1)	34 (9.4)	105 (28.9)	142 (39.1)	78 (21.5)	363 (100.0)
	일반시민	4 (1.1)	45 (14.5)	65 (20.9)	124 (39.9)	74 (27.0)	311 (100.0)
마약범죄의 심각성 정도	경찰	6 (1.7)	37 (10.2)	95 (26.2)	141 (38.8)	84 (23.1)	363 (100.0)
	일반시민	4 (1.1)	52 (16.8)	69 (20.9)	114 (22.2)	72 (23.2)	311 (100.0)
합산통계의 기준 제시	경찰	6 (1.7)	37 (10.2)	95 (26.2)	141 (38.8)	84 (23.1)	363 (100.0)
	일반시민	6 (1.9)	32 (10.3)	87 (28.0)	129 (41.5)	57 (18.3)	311 (100.0)
위험성, 심각성의 기준 제시	경찰	5 (1.4)	20 (5.5)	77 (21.3)	151 (41.7)	109 (30.1)	363 (100.0)
	일반시민	3 (1.0)	10 (3.2)	91 (29.3)	161 (51.8)	46 (14.8)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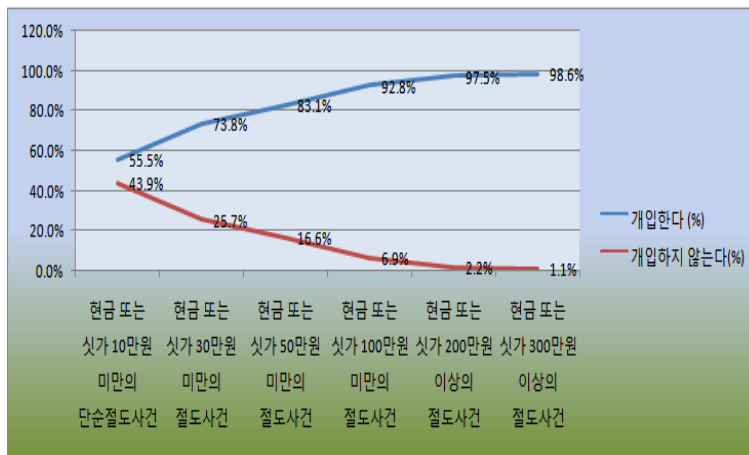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을 때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이다.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절도범죄의 구분이 어느 정도 적합성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측정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 <그림 4-5>, <그림 4-6>과 같다.

1) 절도범죄 구분의 적합성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액사건(단순절도)의 경우 ‘개입한다(55.5%)’와 ‘개입하지 않는다(43.9%)’가 별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현금 또는 時價 300만원 이상의 절도사건’의 경우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8.6%로 나타났다. 즉 그래프의 곡선이 다액사건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경찰력 개입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 件數를 측정하는데 있어 피해액수와 경찰력의 개입정도를 고려하여 범죄통계로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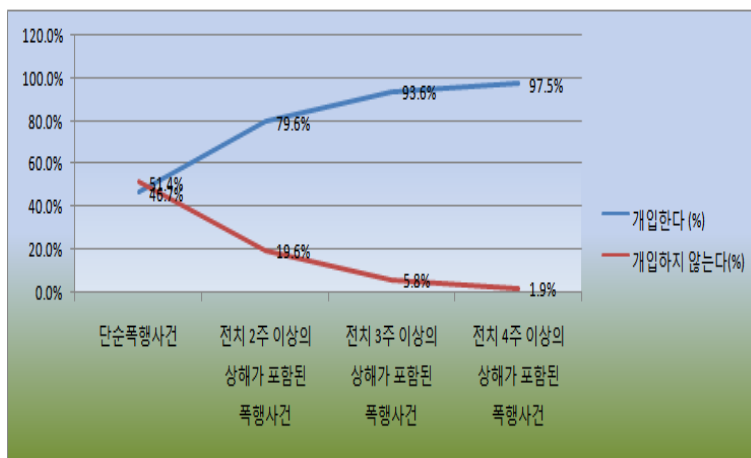
<그림 4-5> 절도피해 액수에 따른 경찰력의 개입여부

2) 폭력범죄 구분의 적합성

<그림 4-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경찰관들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개입하지 않는다(51.4%)’는 응답이 ‘개입한다(46.7%)’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절도범

죄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곡선이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경찰력 개입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폭력범죄에 있어서 단순폭력사건과 같이 오히려 경찰력을 개입하지 않을 정도의 범주는 신고접수 되더라도 '합의(合議)'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건수에 포함시키는 데는 적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건수를 행위중심에 따라 측정하다보면, 범죄통계의 총 발생건수에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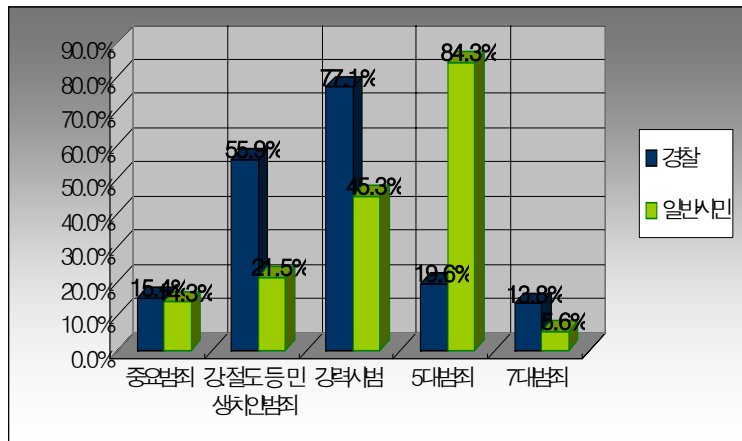
<그림 4-6> 폭력범죄 피해정도에 따른 경찰력의 개입여부

나. 지표의 대표성 여부

<그림 4-7>은 경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치안지표 用例에 따른 그 친숙도를 나타내는 결과인데, '강력사범(77.1%)'이 가장 높은 비율로 친숙하다고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55.9%)', '5대 범죄(19.6%)', '중요 범죄(15.4%)', '7대 범죄(1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강력사범'이라는 용어가 가장 친숙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의 근무기관 및 부서, 계급의 특성상 일선에서 범죄를 담당하고 있고 있으며,⁶⁵⁾ 업무와 관련하여 일상 중에 빈번

하고 쉽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반면에, 일반시민의 경우, 많은 응답자들이 '5대 범죄(84.3%)'가 친숙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은 '강력사범(45.3%)',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21.5%)', '중요 범죄(14.3%)', '7대 범죄(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공식통계 발표나 언론 등 매체를 통하여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며, 또한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지표가 '5대 범죄'임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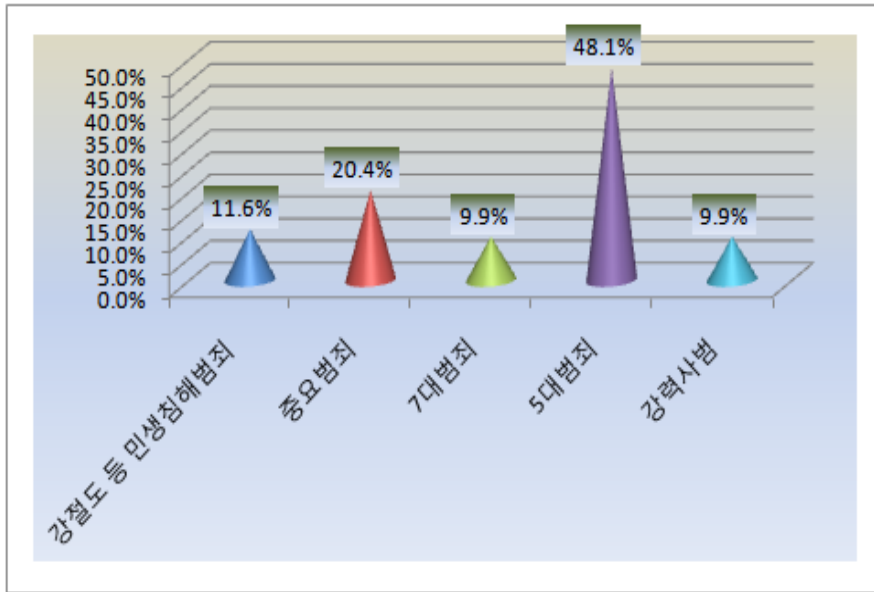


<그림 4-7> 경찰관/시민들의 치안성과지표에 대한 친숙도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경찰관 입장에서,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범죄지표로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아래의 <그림 4-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대 범죄'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요범죄(20.4%)',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11.6%)', '7대 범죄' '강력사범'은 각각 9.9%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들이 쉽게 접하는 '강력사범'이라는 용어보다도 언론이나 공식통계발표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접하는 용어에 있어서 '5대 범죄'가 가장 친숙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5) 위의 <그림 4-1> 응답자(경찰관)의 계급, <그림 4-2> 응답자(경찰관)의 근무기관 및 근무부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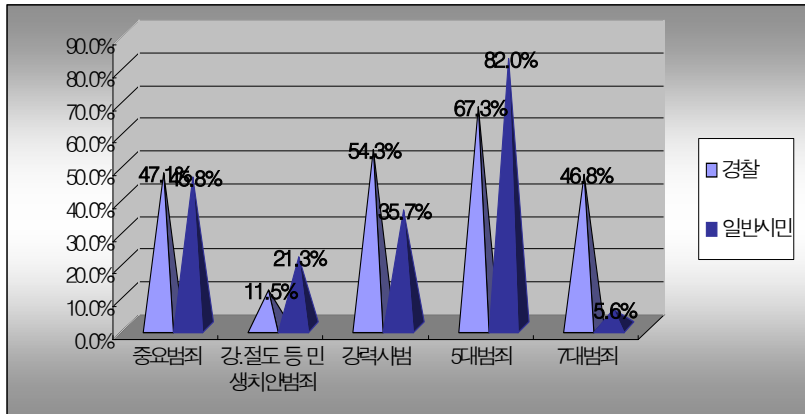


<그림 4-8> 경찰관 입장에서,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범죄지표

이와 같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 향후 각 경찰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되는 치안지표가 대표성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그림 4-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대 범죄’가 6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중요범죄(47.1%)’, ‘7대 범죄(46.8%)’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후자 2가지 치안지표들 간에는 비율이 비슷하여 유의미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의 경우도 치안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파악하고자 제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5대 범죄’가 8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중요범죄(45.8%)’, ‘강력사범(35.7%)’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표들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4-5>에서처럼 경찰관들이 쉽게 접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강력사범’이지만,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되고, 일반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면서 적절한 대표성 있는 치안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5대 범죄’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림 4-9> 대표성 있는 치안성과 지표로서 적합한 유형에 대한 인식비교

4.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표 4-5>는 앞서 살펴 본 결과에 따라 경찰과 일반시민들이 대표성 있는 치안성과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5대 범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만을 나타낸 것이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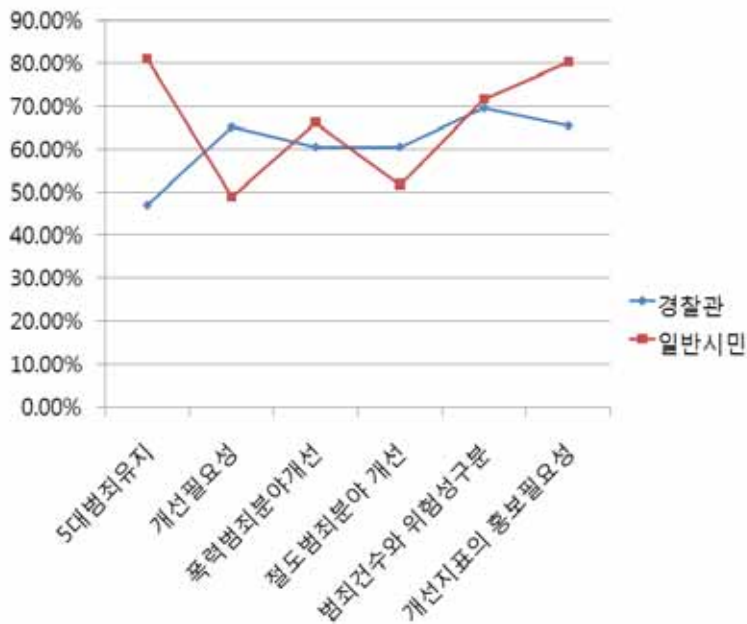
<표 4-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5대 범죄'라는 치안지표를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경찰관들의 47.1%, 일반시민의 80.4%가 각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대 범죄'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경찰관들보다 일반시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시민들은 통일되지 않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혼돈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5대 범죄'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2%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비교해 일반시민의 경우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9.0%이고, 중립적인 응답 또한 48.9%로 나타나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66) 대표지표로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5대 범죄'를 '6대 범죄'나 '8대 범죄'로 개선하기 보다는 유지하고자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앞서 언급한 '7대 범죄'에서 다루었던 '방화 및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따라 범죄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타당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찰관들의 비율은 각각 6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경우도 각각 66.2%, 51.8%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기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시민의 경우, 지표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는 없더라도, 범죄유형에 따른 기준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4-10> 치안성과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 件數를 측정 혹은 산입하는 데에는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경찰과 일반시민 모두 각각 69.6%, 71.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용어가 개선된다면, 범죄통계를 측정하고 치안성과 지표를 사용하는 기관과 이를 홍보하는 언론매체가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야한다는 응답은 경찰관이 69.6%, 일반시민이 57.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지표가 개

선되고 單一化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경찰이 65.5%, 일반시민이 80.4%의 매우 높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4-5> 현행 치안성과지표의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부정	다소 부정	중립	다소 긍정	매우 긍정	계
‘5대 범죄’ 유지	경찰	19 (5.2)	67 (18.5)	105 (28.9)	146 (40.2)	25 (6.9)	363 (100.0)
	일반시민	3 (1.0)	5 (1.66)	51 (16.4)	155 (49.8)	97 (31.2)	311 (100.0)
‘5대 범죄’ 측정 개선 필요성	경찰	4 (1.1)	18 (5.0)	104 (28.7)	178 (49.2)	58 (16.0)	363 (100.0)
	일반시민	10 (3.2)	59 (19.0)	152 (48.9)	83 (26.7)	7 (2.3)	311 (100.0)
폭력범죄의 구분 필요	경찰	10 (1.1)	28 (9.4)	92 (28.9)	163 (39.1)	69 (21.5)	363 (100.0)
	일반시민	-	17 (1.0)	147 (1.66)	127 (16.4)	20 (49.8)	311 (100.0)
절도범죄의 구분 필요	경찰	10 (1.1)	28 (9.4)	92 (28.9)	163 (39.1)	69 (21.5)	363 (100.0)
	일반시민	-	14 (4.5)	136 (43.7)	121 (38.9)	40 (12.9)	311 (100.0)
범죄건수와 위험성의 구분	경찰	3 (0.8)	20 (5.5)	87 (24.0)	176 (48.6)	76 (21.0)	363 (100.0)
	일반시민	1 (0.3)	8 (2.6)	79 (25.4)	183 (58.8)	40 (12.9)	311 (100.0)
매체와 기관의 지표통일 필요성	경찰	5 (1.4)	17 (4.7)	88 (24.3)	153 (42.3)	99 (27.3)	363 (100.0)
	일반시민	5 (1.6)	20 (6.4)	108 (34.7)	136 (43.7)	42 (13.5)	311 (100.0)
개선지표의 홍보 필요성	경찰	5 (1.4)	28 (7.7)	92 (25.4)	145 (40.1)	92 (25.4)	363 (100.0)
	일반시민	-	5 (1.6)	56 (18.0)	153 (49.2)	97 (31.2)	311 (100.0)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시민의 경우 이러한 홍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을 한 者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치안성과지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도가 낮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치안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치안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공식지표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해 봄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경찰실무 및 언론 그리고 정책당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현행 '5대 범죄'를 유지하여 사용하되, 범죄동향과 범죄의 심각성 및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적실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범죄건수를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된 합산통계를 사용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제3절 5대 범죄 관련 언론보도 실태

국내의 언론이나 보도매체에서는 오랫동안 '5대 범죄'라는 용어를 치안지표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의 실제 발생동향과 주요 일간신문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동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언론사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독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유형이나 특이한 범행수법, 범행대상에 대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일반 시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범죄동향과 치안활동의 성과를 직간접으로 경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보도관행은 치안성과/치안지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연구를 위하여 保守的 성향 및 進歩的 성향의 국내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한겨레신문) 2개社를 임의 선정하여 1년간(2006년 11월 20일-2007년 11월 20일까지) 주요 범죄의 발생관련 보도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히 경찰청에서 활용한 바 있는 '7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재단 홈페이지(KINDS)상에서⁶⁷⁾ 범죄관련 Key-Word를 검색하였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실제범죄에 대해서 보도된 건수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실제 발생사건과 관련없는 用語들(영화제목, TV프로그램, 서적, 외국의 사례, 과거의 범죄, 다른 사건 혹은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등)을 삭제하고, 여러 건의 범죄에 관련된 Key-Word가 등장하는 경우, 重한 범죄유형에 산입하였다. 폭행/폭력은

67) 한국언론재단(<http://www.kinds.or.kr>)이 구축한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Key-Word로 간주하였으며, ‘性폭행’으로 검색되는 단어는 ‘강간’부분에 산입하였다. 동일사건을 수회(2/3일에서 몇 주까지)에 걸쳐 보도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였다.

대체로 言論社에서는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 경찰청 및 他수사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범죄사건 보도경향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마약 등 주요범죄들은 상기의 <표 4-6>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론사별 보도건수나 비율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비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언론사의 보도실태에 따르면, 일반인이나 경찰이 판단하기에 ‘심각한 범죄유형’에 비례하여 보도하고 있다. 즉 살인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율(1.5%)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대 범죄’ 유형 가운데, 실제 발생건수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한겨레 19건, 동아일보 11건)과 절도사건들(한겨레 18건, 동아일보 25건)에 대해서 보도된 사례는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발생건수 대비 보도비율(극소수)은 가장 낮았다. 아마도 言論社에서는 절도나 폭력범죄의 경우, 이른 바 보도 가치가 있는(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범죄유형을 선별하여 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범죄수법, 범행대상 등 특이한 극소수의 사건들만을 보도한 것이다.

연구자가 예상한 바와 같이, 방화범죄 및 마약관련범죄에 대한 보도빈도가 강도범죄에 육박할 정도의 비율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言論社가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불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 보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론사의 보도관행까지 고려한다면, 기히 활용한 바 있는 ‘7대 범죄’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5대 범죄’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유형 외에도 방화, 마약범죄의 보도빈도가 높은 점은 치안지표와 관련하여 고려될 부분이다.

<표 4-6> 실제 범죄발생건수와 언론보도상의 차이(단위: 건, %)

죄명	실제 발생건수 (2006년) ⁶⁸⁾	언론 보도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보도건수	비율	보도건수	비율*
살인	1,064	16	1.5%	16	1.5%
강도	4,684	11	0.234%	12	0.256%
강간	13,573	8	0.059%	10	0.074%
절도	190,745	18	0.009%	25	0.013%
폭력	251,190 ⁶⁹⁾	19	0.008%	11	0.004%
방화	1,685	6	0.356%	5	0.296%
마약	5,059 ⁷⁰⁾	9	0.177%	10	0.197%

* %는 소숫점 네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4절 지표범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대부분은 '5대 범죄', '7대 범죄' 및 '중요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응답자의 1/3 정도만 '5대 범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7대 범죄'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동향은 아무래도, 치안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치안성과 지표에 포함된 각종 범죄유형들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68)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서울: 대검찰청, 2007), p. 52. in: <http://www.spo.go.kr/upload/c.47-150.pdf>(2007년 11월 24일 검색)

6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서울: 대검찰청, 2007), p. 50. 상기 인터넷 자료. 폭행(64,235건), 상해(79,542건), 협박(2,920건), 공갈(2,876건), 약취와 유인(171건), 체포와 감금(615건), 폭처법(단체등의 구성, 활동 170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00,661건) 등임.

7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서울: 대검찰청, 2007), p. 52. in: <http://www.spo.go.kr/upload/c.47-150.pdf>(2007년 11월 24일 검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647건, 대마-677건, 향정신성-3,726건, 의약품-본드, 신나등 환각물질과 알콜은 제외함)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9건)발생하였음.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조차도 7대 범죄나 5대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향후 경찰관들이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5대 범죄' 유형에 속하는 폭력범죄와 절도범죄 통계치들이 곧바로 합산되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들이나 일반시민들도 그 적합성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否定的 평가를 하고 있는 동향이다. 이는 본연구의 목적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범죄의 質的 특성, 경찰개입 우선성 여부에 상관없이 합산처리된 범죄통계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대 범죄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방화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해서 대체로 비율의 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합산통계의 개선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이 그 必要性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5대 범죄' 유형 가운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절도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경찰개입의 우선성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또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폭력범죄의 경우, 경찰관들은 피해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경찰개입 우선성이 달리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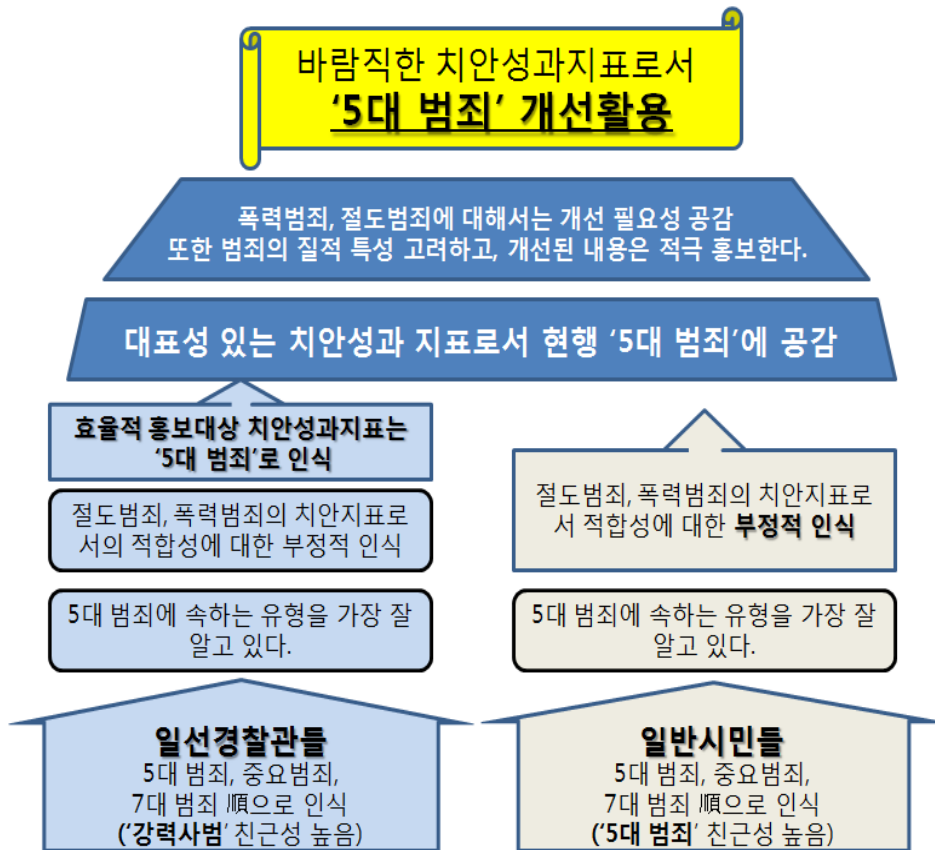
치안성과지표에 대한 친숙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선경찰관들은 '강력사범'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친숙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5대 범죄'라는 용어를 훨씬 더 친숙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찰관들은 다른 치안성과지표들에 대해서도 평소 알거나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5대 범죄'와 '강력사범'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거의 알고 못하는 실정이다.

'5대 범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응답한 경찰관들 비율보다, 일반시민들의 비율이 갑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들의 경우, 치안성과지표들에 대해서, '5대 범죄'를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에 대해 더욱 생소하게 인식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5대 범죄'라는 치안성과 지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선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이 대체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발생건수를 합산한 통계치를 치안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이 범죄관련 보도관행을 살펴보면, 언론사의 성향(保守 vs. 進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5대 범죄' 가운데, 범죄의 심각성이 높게 인정되는 순위대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 순으로 보도하고 있는 동향이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 연구자가 예상했던 바와 비슷하게 '7대 범죄'개념에 포함되는 방화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보도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가 치안성과지표를 생성, 활용하는 경찰입장보다는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범죄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11>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현행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

경찰활동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치안성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치안성과 지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치안성과 지표를 통하여, 시민들과 정책당국을 제대로 설득, 이해시킬 수 있어야, 추가적인 경찰자원의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찰에서는 지난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수행을 계기로 실무상 ‘5대 범죄’라는 치안성과지표를 오랫동안 활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일관된 원칙이 다소 결여된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여러 가지 치안성과 관련 지표들-‘중요(주요)범죄’, ‘5대 범죄’, ‘7대 범죄’, ‘강력범죄’, ‘강력사범’, ‘민생침해범죄’ 등-을 혼용하고 있어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조차도 그 개념, 범위 및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일선경찰관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용어들의 용례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치안성과지표에 포함되고 있는 ‘5대 범죄’유형들 가운데,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범죄의 質的 성격(피해규모, 범행특징,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과 경찰력 개입우선 순위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발생사건들이 합산통계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합산된 수치들이 그대로 ‘총발생건수’라는 이름하에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경찰활동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잣대로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활동의 성과들이 적실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시민들 역시 ‘총범죄발생건수’개념으로만 인식하게 되어서, 자칫 치안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할 것이다. 이에 본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치안성과지표를 마련코자 ‘5대 범죄 등’을 중심으로 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언론(동아일보 및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범죄사건의 실태를 실증분석하기에 이르렀다.

선진 각국의 경찰에서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범죄통제와 관련된 치안성과

지표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향이다. 이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경찰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제1절 기본방향: 現行 '5대 범죄'유형을 유지 및 개선활용

바람직한 치안성과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시민들과 정책당국이 경찰활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그리고 치안수요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제한된 치안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치안성과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재 활용중인 '5대 범죄' 개념은 오랫동안 경찰실무, 언론 그리고 정책당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경찰관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用語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객관적, 학문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었다. 치안지표로서의 장점이라면, 시민들과 정책당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안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경찰관들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및 배려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치안성과지표의 활용과 선정시에는 해당직무분야 종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모두 용이하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개념과 용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관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용어는 '강력사범'이지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지표는 역시 '5대 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행 '5대 범죄'라는 치안성과지표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범죄동향과 범죄의 심각성 및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적잖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은 현행 '5대 범죄'개념을 유지, 개선하여 치안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경찰관들과 일반시민들의 인식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소한 새로운 개념을 도

입하는 것에는 많은 난점이 있을 수 있다.

1990년 이후 경찰실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익숙하게 된 '5대 범죄'라는 용어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그 효율성이나 인식도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되,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5대 범죄'개념을 유지·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범죄 유형(절도범죄 및 폭력범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소 개선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문제시되고 있는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를 통계 처리하는 면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절도 및 폭력범죄 활용상의 문제점 개선

1. 202통계 처리상 拘束/不拘束사건 기준으로 구별하는 방안

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拘束, 不拘束사건으로 구분하여 통계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절도범죄 및 폭력범죄의 경우(2006년도 대검찰청 자료기준), 拘束사건들을 기준으로 하면, 절도죄의 경우 전체 발생사건 가운데, 12.2%로 감소하며, 폭력범죄의 경우 1.3%로 감소된다. 이런 식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작성된 범죄발생통계를 활용한다면, 현재까지 거론된 상당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범죄유형별 범죄자 조치사항

범죄유형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합계
살인	676명(70.5%)	283명	959명
강도	1,520명(49.9%)	1,527명	3,047명
강간	2,294명(22.2%)	8,059명	10,353명
절도	7,884명(12.2%)	56,928명	64,812명
폭력	3,834명(1.3%)	284,926명	288,760명
방화	270명(25.7%)	779명	1,049명
마약	2,793명(43.8%)	3,582명	6,375명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참조)

2. 범죄심각성-피해규모-에 따른 차별적 활용

가. 절도범죄부분 개선방향

- ▶ 절도범죄를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독일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重절도 및 輕절도),
- ▶ 피해규모가 큰 자동차절도범죄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미국과 영국의 Vehicle Theft),
- ▶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범죄유형인 “주거침입절도범죄”를 별도로 분리활용하는 방식,
- ▶ 일정한 피해규모(예를 들면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상의 피해규모, 캐나다는 피해금액의 多寡-5,000달러기준-를 기준으로 분리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만을 지표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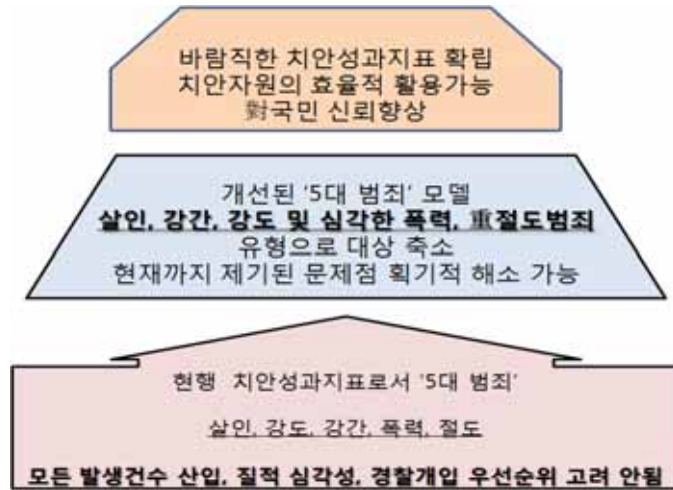
그래서 범죄의 심각성, 범행수법의 특이성, 범행대상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발생 절도범죄들 가운데, 자동차절도(피해금액이 현저히 큼), 주거침입절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특성), 피해금액 50만원 혹은 100만원 전후의 절도범죄를 각각 유형화하여 별도로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치안성과 지표에 포함된, 절도범죄발생 통계치 활용에 대해서 그 구체적 기준(피해금액)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경찰에서는 重절도와 일반절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경찰 등에서는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등 범행대상, 수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세분하고 있는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에서는 재산범죄 통계분석과 관련, 재산의 피해정도를 ‘피해무, 1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未詳’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피해가 없거나 100만원 이하’ 피해정도가 전체 재산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84.2%에 달하고 있어서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 분류시, 절도범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현저히 적은 절도범죄의 경우, 피해시민들이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경찰당

국의 개입사례가 적고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50만원 전후로 세분, 절도범죄의 피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5대 범죄'의 절도범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2> 치안성과지표로서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

(2) 폭력범죄부분 개선방안

현행 '5대 범죄' 분류방식상 폭력범죄 유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범죄유형은 단순·우발 폭행사건들이다. 이들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간 面識관계에서 혹은 飲酒상태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피해법익의 심각성이 높은 상해 및 重상해범죄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⁷¹⁾

범행수법, 피해정도(상해진단 기간)에 따라서 활용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폭력범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폭행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치안성과지표에서 축소 혹은 제외시키는 것이 경찰력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되

71) 현행 한국 형법에서의 重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전제하고 있는 바, 독일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重상해죄 구성요건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경찰(重상해, 일반상해), 독일연방경찰(重상해 및 일반상해) 및 캐나다경찰 사례(폭행정도의 세분화)를 소개하였다.

- ▶ 폭력범죄 가운데, 광의/최광의 폭행개념에 해당되는 범죄유형⁷²⁾ 제외하여 독일 경찰의 사례와 같이 意思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으로 별도로 기재하고, 상해 및 중상해범죄, 협의/최협의 폭행개념에 해당하는 폭력범죄만을 '5대 범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 혹은
- ▶ 피해규모 및 罪質이 심각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사건들만 지표 犯罪化하는 방안 (이러한 경우, 경미/단순, 우발적인 다수의 폭행사건들이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구상할 수 있다.
- ▶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절도범죄와는 달리, 面識관계에 있는 者들간의 言爭 등(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바,⁷³⁾ 주거침입절도범죄에 비하여 오히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는 정도(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傷害)를 기준으로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찰실무상 치료일수가 3주 이상 소요되는 상해범죄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관행을 반영하면,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폭력수준 level化), 영국(serious wounding), 독일경찰(重상해로 구분)의 사례를 참고하면,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72) 현행 5대 범죄 분류상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범죄유형은 단순 혹은 우발 폭행사건들이다. 이들 범죄는 면식관계에서 대부분 벌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피해 범익의 심각성이 높은 상해 및 중상해범죄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18682>(2007년 11월 4일 검색) 내일신문기사입력 2005-05-11 ◆ 지나친 음주문화로 폭력 사건 많아 =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를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절도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폭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는 295건으로 미국 1196 일본 1553 러시아 1376 프랑스 3442 독일 3677건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은 511건으로 미국 295 일본 49 러시아 127 프랑스 390 독일 170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음주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와 관련 주취자 및 폭력사건 처리가 일선 경찰서 치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폭행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反意思不罰罪인 경우가 많은 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개입의 가능성이 그 만큼 낮은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장기과제: 선진국형 '6대 범죄' 혹은 '8대 범죄' 모델

기존의 '5대 범죄' 유형에다 범죄에 두려움이 높다고 평가되어, 시민들로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절도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방화범죄 및 마약범죄를 포함시킨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방화범죄 및 마약범죄 추가 논의

현행 '5대 범죄'분류방식에 포함되지 않은 방화범죄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대 범죄'가 될 것이다.

게다가 마약범죄를 포함시키면, 과거에도 활용된 바 있는 '7대 범죄'유형과도 유사하게 된다. 그런데 마약범죄(소위 victimless crime)는 선진 각국에서도 지표범죄로 곧바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 나라에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 선진국형 '6대 범죄' 혹은 '8대 범죄' 개념 활용

선진 각국 경찰당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식, 즉 美國式의 □8대 범죄□ 혹은 英國式 □7대 범죄유형□ 분류방식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對人 폭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행)와 對人 재산범죄(절도,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방화)로 大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진 각국의 경찰활동 및 치안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으며, 한국의 치안지표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활동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경제력 및 국력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선진 각국과 동일 유사한 치안지표 혹은 치안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한편 독일 연방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폭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상해) 및 절도범죄 분류방식이라던가 영국경찰의 '6대 범죄'와 같은 분류방식은 한국의 '5대 범죄' 유형과 매우 비슷하다.

<표 5-2> 치안성과지표로서 '5대 범죄'의 유지 및 개선모델

현행 방식	'5대 범죄' 유지 및 개선안	장기과제모델
① 살 인 ② 강 도 ③ 강 간 ④ 폭 력 ⑤ 절 도	① 살 인, ② 강 도, ③ 강 간, ④ 심각한 폭력(상해 3주 이상 혹은 구속사건), ⑤ 중절도 (구속사건, 주거침입절도 및 피해금액 50만원 이상)	개선안+방화범죄추가
▶절도, 폭력범죄의 질적 심각성 고려 되지 않음. ▶경찰개입 우선성 확인이 곤란	▶범죄의 질적 심각성 고려됨. ▶경찰개입이 필요시 되는 범죄유형 가시화	▶방화범죄는 전형적인 가두범죄이면서, 시민/언론의 관심이 높은 범죄유형을 편입 시킴으로써 경찰개입의 우선성 가시화
▶경찰관들과 일반 시민들에 친숙한 개념임.	▶경미절도, 단순/우발 폭행사건 제외가능 ▶치안지표로서의 적실성 향상 ▶독일경찰, 영국경찰, 캐나다경찰의 범죄통계 작성 방식과 유사	▶언론의 보도관행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영향이 큰 범죄유형임. 미국 연방경찰(UCR)의 범죄통계 작성방식과 유사

참 고 문 헌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서울: 경찰청, 2007.
- 경찰청,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등.
- 경찰청, 『경찰백서 2006』. 서울: 경찰청, 2006.
- 경찰청 수사국, “범죄통계 산출방안 검토보고(내부자료)”, 2005.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3』. 서울: 경찰청, 2004.
- 김준호 외,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노화준,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2004.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서울: 대검찰청, 2006.
- , 『범죄분석 2007』. 서울: 대검찰청, 200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용인: 법무연수원, 2006.
- 오영균, 고경훈,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의설계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일본) 경찰청, 『平成 15년판 警察白書』. 동경: 경찰청.
- 한국통계학회 편, 『통계용어사전』. 서울: 자유아카데미, 1991.
- 대전일보 2006년 09월 27일자
- 한국일보 1998년 02월 11일자
- Gerke, Juergen, Strafrecht, 2. Auflage. Koeln: Kohlhammer, 1998.
- Otto, Harro, Grundkurs Strafrecht-Die einzelnen Delikte, 5. Auflage. Berlin et al.: Walter de Gruyter, 1998.
- Schmidt, Rolf/Seidel, Stephanie, Strafgesetzbuch -Besonderer Teil II -Vermögensdelikte, 3. Auflage. Bremen: Verlag Rolf Schmidt, 1999.

미국 법무부 발간자료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2002: Uniform Crime Reports,

영국 내무부 발간자료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against individuals and households 2003/04.

Policing London,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and Metropolitan Police Service Policing London Strategy for 2007-10 and Policing Plan for 2007-08.

Home Office,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05-6: A Summary of the Main Statistics.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자료

BKA, Polizeiliche Kriminalistik 2006.

<http://www.crimestatistics.org.uk/output/Page109.asp>(2007년 12월 12일 검색)

□Crime Statistics for England and Wales□

<http://dejure.org/gesetze/StGB/244a.html>(2007년 12월 12일 검색).

http://www.met.police.uk/about/plans.htm#pol_lon_strategy(2007년 12월 12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251536>(2007년 11월 4일 검색)YTN 2005-12-15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040190>(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307406&tid=0&sid=E> (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08833>(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301298&tid=0&sid=E>(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126813> (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046938> (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22020202769847&newssetid=746>(2007년 8월 26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18682>(2007년 11월 4일 검색)

<http://www40.statcan.ca/101/cst01/legal04a.htm>(2007년 11월 7일 검색)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http://dic.naver.com/?frm=nt>)

<http://www.nso.go.kr/>)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07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 선정된 "범죄지수, 치안정책 성과"의 측정지표로써 '5대 범죄' 활용의 한계 및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 문항에 대해 직접 느끼고 생각하시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됨과 동시에 정책적 방향의 모색에도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임 준 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Tel: 02-2260-3253 / E-mail: jtlim@dongguk.edu)

아래의 사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1	연 령: (세)
2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
3	귀하의 총 경찰재직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4	귀하의 계급은? ①순경 () ②경장 () ③경사 () ④경위 () ⑤경감 () ⑥ 경정 ()
5	귀하의 현재 근무기관은? ①경찰청 () ②지방경찰청 () ③일선경찰서 () ④지구대 () ⑤기타 부속기관 ()
6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는? ①생활안전 () ②수사, 형사 () ③경비, 교통 () ④정보 () ⑤외사, 보안 () ⑥ 경무 ()
7	귀하의 현재까지(2007년 11월)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는? ①생활안전 () ②수사, 형사 () ③경비, 교통 () ④정보 () ⑤외사, 보안 () ⑥ 경무 ()

아래에서는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치안성과지표의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동의의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의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매우 부정	다소 부정	중립	다소 긍정	매우 긍정
8	한국에서 사용하는 치안성과지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중요범죄”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중요범죄에는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이 포함된다.) 강력범에 속하는 범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5대 범죄’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5대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7대 범죄’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7대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위의 범죄지표들은 경찰백서, 경찰통계연보, 국정감사자료, 언론 및 他기관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범죄지표 용어들이 사용되는 출처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각각의 범죄지표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의 용어들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용어에 표시해 주십시오.
오.(_____)

- ① 중요범죄
- ②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 ③ 강력사범
- ④ 5대 범죄
- ⑤ 7대 범죄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치안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생각의 정도를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질문	매우 부정	다소 부정	중립	다소 긍정	매우 긍정
18	(1998년부터는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으로 구분하여 “중요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강력범에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중요범죄”의 용어가 대표적인 범죄 지표로써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1991년부터는 범죄통계 자료의 중요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범죄유형을 “5대 범죄”로 통계산출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5대 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은 그 구분 기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폭력범죄는 중폭력과 경폭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건수로 집계된다.) 이러한 기준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절도범죄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하나의 범죄 건수로 집계된다.) 이러한 기준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5대 범죄”라는 용어가 대표적인 범죄지표로써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7대 범죄”는 “5대 범죄”에 마약, 방화를 추가된 것이다.) “7대 범죄”에 마약범죄가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7대 범죄”는 “5대 범죄”에 마약, 방화를 추가된 것이다.) “7대 범죄”에 방화범죄가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7대 범죄”의 용어가 대표적인 범죄지표로써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범죄지표라는 합산통계 내의 각각의 범죄유형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예: 살인1건, 절도1건 또는, 중폭력1건, 경폭력1건 등..)	①	②	③	④	⑤
27	각각의 범죄지표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범죄발생 중요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각 기관, 매체에서 범죄지표로써 사용되는 용어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범죄의 발생빈도와 위험성의 상이에 따른 범죄유형을 고려하여 집계, 분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음의 용어들 중에서 치안성과를 매체 또는 일반시민들에게 공표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대표성) 생각하는 범죄지표를 표시해 주십시오.

.....(_____)

- ① 5대 범죄
- ② 중요범죄
- ③ 7대 범죄
- ④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 ⑤ 강력사범

다음은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은 폭력범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고접수를 받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 “개입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직무태만과 관계없이 경미사건으로 간주 또는 합의중재 등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번호	예 시	경찰력 개입 여부	
40	단순폭행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1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포함된 폭행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2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포함된 폭행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3	전치 4주 이상의 상해가 포함된 폭행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다음은 절도범죄와 관련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은 절도범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고접수를 받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 “개입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직무태만과 관계없이 경미사건으로 간주 또는 합의중재 등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번호	예 시	경찰력 개입 여부	
44	현금 또는 10만원 미만의 단순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5	현금 또는 30만원 미만의 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6	현금 또는 50만원 미만의 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7	현금 또는 100만원 미만의 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8	현금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49	현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절도사건	1. 개입한다	2. 개입하지 않는다

다음은 향후 치안성과지표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의 응답은 앞서 응답해 주셨던 치안성과지표의 인식과 적정성에 대한 질문문항에 포함되었던 설명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안성과지표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질 문	매우 부정	다소 부정	중립	다소 긍정	매우 긍정
50	(앞서 설명 드렸던) “5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써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앞서 설명 드렸던) “7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써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50번, 51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지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만약 “5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 유지한다면, 절도범에 대한 기준은 다액절도와 소액절도의 피해액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4	만약 “5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 유지한다면, 절도범에 대한 기준은 다액절도와 소액절도의 피해액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5	만약 “7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 유지한다면, 마약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6	만약 “7대 범죄”를 대표적인 치안성과지표로 유지한다면, 방화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7	치안성과지표가 개정될 경우, 확정된 지표는 일반시민들에게도 홍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